第229回國會
(臨時會)

政務委員會會議錄 第 1 號(附錄)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2年4月15日(月)

場 所 政務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 · 답변서】

(질의서)

○徐相燮 委員

(국무조정실)

황사 '종합관리체계' 급하다

1. 사상 최악의 황사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 황사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간 정부의 대처상황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① 기상청에서 황사 발생 1일전에 황사가 있을 것임을 예보한 바 있으나, 황사의 강도(强度)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② 황사시 국민, 농·축산가, 학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국민 대처요령이 없어 혼란이 발생.(학교휴업 시 통보가 지연되고, 시·도별로 기준이 달랐으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프로야구 경기가 진행됨)
   ③ 황사가 축산업은 물론 정밀기기 등 산업전반에 영향을 주지만 최근 몇 년간 황사에 따른 피해액, 피해인원 등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조사·연구된 자료가 없습니다.

- 황사와 관련해 과학기술부,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가 그동안 부처간 업무분장을 서로 미루다가 태풍이나 눈·비와 같은 '주의보-경보'로 이어지는 '특보시스템'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 4월8일 황사경보제 첫 발령, 4월10일 환경부 황사경보제 폐지, 황사특보제로 명칭도 바뀌고 업무도 기상청으로 옮겨간 것은 졸속정책의 표본임. 시정대안은 무엇인가?
- 향후 황사발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황사가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에 대한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FTA지연 땐, 3등 국가 추락

1. 범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확보하며,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서는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며, 현재 정부는 한·칠레 FTA, 한·일 FTA, 동아시아 FTA, 한·아세안 FTA 등 4개의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99년 12월 이후 칠레와 FTA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외교부와 농림부의 갈등으로 2년 넘게 지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분야 주요현안의 부처간 이견에 대해 정책조정기능의 실종에 대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3. 한·칠레 FTA뿐만 아니라, 지난 고이즈미 총리방문시 정상회담에서 다룬 한·일 FTA 역시 부처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될 여러 FTA 역시 부처간 이해관계의 대립은 불보듯 뻔한 상태입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인교 FTA팀장)은 '오는 2005년 동아시아의 통상조건이 많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FTA협상을 빨리 시작하여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형성 논의에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분야 주요현안의 부처간 이견에 대한 조율·조정이 필수적이나,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기능은 매우 미흡하므로 보다 더 분발해야 되며, 정책조정기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정부출연(연) 연구활성화대책비 집행계획이 무엇인가?

1. 2002년도 세출예산편성과정에서 연구회별로 소

속연구기관 기본사업비의 5%, 총 193억 2,900만원을 총액으로만 계상하여 정기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출연연 인건비 지원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예산임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4월11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활성화대책비의 집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5월 정기이사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처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고 밝혔음에도, 국무조정실에서 집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건비 지원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 편성된 예산의 집행계획을 확정짓지 않고,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의 정도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나눠주기 위해서인가? 대선을 앞두고 상여금으로 생색내기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정략적인 의도가 아니라면 구체적 집행계획을 밝혀 달라.

- 아울러 이번 활성화대책비가 일회성예산인지 계속 편성되는 예산인지도 정확히 밝혀 달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사장 선출을 투명하게 하라

1.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사직('02.1.29) 및 4개 연구회 이사장의 임기만료('02.3.14)에 따라 5개 연구회 이사장이 3.15일에 임명됨.

연구기관의 기관장 선출은 정출연법 및 정관 등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관하는 연구회의 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법적근거는 연구회의 내부규정인 이사장추천위원회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이사장 임기를 3개월 앞두고 만들어진(2001.12.19) 이사장추천위원회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① 이사 및 기관장 3명 이상이 연명으로 이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출연법 시행령과 이사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이사장의 이사 및 소속 연구기관장 추천권과 배치됨. 이해 관련자들 간의 상호추천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② 이사장의 선출 시 당연직 이사에 한하여 3급 이사의 공무원에게 대리 참석권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권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사례입니다.

③ 이사장 선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추천위의 회의록 및 추천결과의 공개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번 이사장 선출 시 모든 회의가 회의록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추천위의 후보추천사유, 후보의 전문성 및 적격성, 후보가 제시하는 비전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대책을 자세히 밝혀 달라.

○嚴虎聲 委員

정부출연연구회의 이사회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

□ 정부출연연구회의 이사회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는 각 연구기관에게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 등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로 인하여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견해는?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연구회 이사장들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 정부출연연구회의 이사회 당연직 이사수를 축소해야 한다.

○ 먼저 현행 정출연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 이사의 수를 축소하여야 정부의 입김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써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확보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견해는?

- 당연직 이사가 많음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방안'(98. 5. 13 국무회의 시 보고사항)에서 밝힌 '민간경영개념도입'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너짐.
- 정출연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나에 열거된 임기 1년의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 운영에 관한 관심이나 축적된 지식이 적어 이사회 운영에 도입이 안 되고 있으며 원장임명에

정부 측 인사를 심는 역할만을 할 뿐 입니다.

○ 따라서 경제사회연구회는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차관, 재경부 차관으로 하고, 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차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으로 하고, 과학기술관련 3개 연구회는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 차관, 과학기술부 차관으로 그 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 이사장 및 이사임기를 연장(6년) 해야 한다

○ 경영혁신방안 및 각 연구원 정관에 의해 1인 이사인 연구원장은 정원, 인사, 예산 등에 관한 배타적 권한을 갖고 있으나, 상위 기관인 연구회 이사장은 원장임명과 동시에 해당연구원에 대하여 Lame duck 현상이 생겨서 제대로 지도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원장의 연임 여부가 현 이사장 및 이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이사회가 각 연구원을 실질적으로 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견해는?

□ 원장의 임기도 5년으로 해야 한다.

○ 연구원 원장이 원외에서 기용된 경우 연구원 실정을 파악하고, 개개연구원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여 연구원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데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데 임기만료 6개월 전에는 이미 레임덕 현상이 생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남.

○ 따라서 신임 원장이 연구원을 운영하는 실질기간은 18개월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연구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 더 연장하여 5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는?

□ 연구원 원장이 연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 각 연구원별 각 경영평가결과 2회 계속하여 A급 평가를 받은 원장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B급 평가를 받은 원장 또는 1회 A급 평가를 받고 나머지 1회는 B급 평가 또는 C급 평가를 받은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재신임의 기회를 주고, C급 평가를 2회 연속 받은 원장은 무조건 퇴임시킨다면 경영평가와 이사회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는?

□ 경영평가는 격년제로 해야 한다.

○ 매년 각 연구원별로 연구능력 및 행정능력의 5%~10%는 경영평가에 대비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낭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원별 경영평가는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는?

탈북자 종합대책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 시급하다

□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탈북자 관리 시스템 문제

○ 탈북자수가 지난 99년 이후로 급증(99년 148명,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탈북자에 대한 종합관리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 예컨대, 지난 2월 유태준씨 사례에서 밝혀졌다싶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이원화된 관리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상호 기관간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혼선이 초래(탈북자 교육시설인 하나원에 입소되기 전에는 국정원이, 그 이후에는 통일부에서 관리)된 것이라든지,

○ 탈북자 1인당 지급되는 정착금 3700만원으로 중국 등지에 남아있는 탈북자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다시 빠져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든지,

○ 또한 현재 정부가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임금 50%를 지원하면서 탈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겨우 2개월간의 사회적응 훈련을 거친 탈북자가 우리나라에서 와서 직장 생활 등에 부적응하는 경우 등을 본다면,

○ 현재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관리체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의 견해는?

□ 탈북자 도미노 현상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준비 필요하다

○ 탈북자에 대한 최근 사건을 보면,

- 2001년 6월 : 장길수 가족 7명이 베이징 주재 유엔사무소에 들어가 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구한 끝에 4일만에 필리핀을 거쳐 서울로 입국
- 2002년 3월 14일 : 탈북자 25명이 주중 스페인대사관에 진입하여 한국행을 원한다는 성

명서를 발표, 또다시 탈북자의 문제가 제기

○현재 탈북자를 난민상의 규정에 의해 난민으로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국제법상 예우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탈북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을 하였으며 이러한 경제적 이유는 난민의 개념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중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들의 거점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외교적 관점에서 이번에도 장길수 가족 때와 마찬가지로 제3국을 통한 입국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소지가 큼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더욱이 난민의 개념에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지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인문사회연구회 이사 또는 통일연구원장에게 질문)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통일연구원은 탈북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99년 이후부터 정부에서 용역을 수탁 받아 탈북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 종합적인 연구 실적 없음

○이러한 탈북자 보호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9년부터 통일연구원은 1년에 1번꼴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자체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통해 정부(통일부)에 탈북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및 조정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체 연구보고서를 통해 탈북자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고, 탈북자와 관련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등 관련부처에 다각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지 않은 것은 통일연구원 측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난민의 개념 : 인종・종교・국적・정치적 견해, 특정사회단체 참여 등의 이유로 인한 박해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국을 떠난 후 귀환할 수 없거나 귀환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

○李性憲 委員

현대판 장안(贓案)을 도입해서라도 부패를 막아야

최근 대통령 아들 3명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게이트들이 물보 터지듯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오늘 보도된 기사이다. 대통령 3남 홍걸씨의 비리와 연루된 최규선씨가 모호텔에서 관련 경찰 고위 간부등과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성역없는 엄정수사를 외치고 있는 검찰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반부패대책을 외치고 부정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고 반부패대책관계장관회의를 해보았자 소용이 없다.

이용호게이트 특검에서도 검찰총장, 국세청장, 공직에 있는 대통령 인척 등 줄줄이 나왔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터져나올지 모를 일이다.

왜? 행정부 최고 수장인 대통령 자신의 아들과 인척들이 줄줄이 엮여 있으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벌거벗은 임금님'꼴이 되어 있으니 누가 칼자루를 쥘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은 조선 성종 때 일을 소개하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아들과 인척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조선 성종 1년, 고위관리이자 왕의 외척인 김정광이란 자가 뇌물을 받아 처벌된 일이 있었다. 당시 수사에 나선 의금부가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자 사헌부가 재수사를 한 끝에 그는 곤장 100대를 맞고 종으로 신분이 떨어져 변방으로 쫓겨났다. 이 때 '장안(贓案: 뇌물죄를 지은 관리 명단)'에 이름이 실렸는데, 장안에 오르면 그 후손은 대대로 벼슬길이 막혔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권력형 게이트'는 엄단했었다. 권력의 부정부패는 시대를 떠나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오죽했으면 조선시대에 '장안'이란 것을 만들어 부패한 관료들의 벼슬길을 막았겠는가!

우리는 지금 현대판 '장안'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총리훈령 위배한 금융감독위원장 처리문제

□ 질의사항

본 위원은 지난 2월6일 임시국회 상임위 정책질의에서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이라는 총리 훈령 408호를 들어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인사를 문제삼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의가 있은 지 10일 후인 2월15일 금융감독기구의 총수인 이근영 원장은 김정태 국민은행장과 이순철 부원장보를 국민은행 감사에 내정할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월26일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이순철 부원장보의 전직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3월4일 국민은행 감사추천위원회에서는 이순철 부원장보와 이철주 당시 국민은행 감사를 2인 감사체제로 복수 추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순철 부원장보는 전직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가 가지 않겠다는 감사자리를 놓고 국민은행 주주총회에서는 3월 22일 감사로 선임까지 했습니다. 이후 국민은행은 4월 9일 이순철 부원장보를 감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이순철 부원장보는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에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이중으로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희극적인 일이 발생했는데도 국무조정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정면으로 총리훈령 408호의6조를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금융감독당국의 총수가 금융기관에 대해 낙하산인사를 실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훈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국무조정실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부처별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 지원 문제

□ 질의사항

2002년도의 정부 부처별 자금별(기금과 일반회계)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보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11개 부처에서 91개 사업명목으로 6조257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5조9357억 원이 지원됐는데 정부 부처 중 산업자원부가 26개 명목으로 1조3037억 원, 중기청이 18개 명목으로 2조6089억 원이 정책자금으로 지원됐습니다. 2002년도 지원계획도 비슷한 규모로 계획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사업 종류를 보면서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비슷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 기관이 다원화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로 인해 너무 중복돼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무조정실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까닭은 국무조정실이 부처간 조정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 위원은 각 부처별 사업을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관리할 것이 아니라 지원 자금의 성격에 대한 구별 없이 단일한 창구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까지 중소기업지원에 나서고 있어 정책자금은 더욱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해당부서나 정부 부처의 담당 부서가 정책자금 지원하는 일에 매달려 있는 구태의연한 행정체계는 이젠 고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과 관련된 독직사건에서 보듯 비리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자원부의 지원사업 24개와 중소기업청의 18개, 과학기술부의 2개, 정보통신부의 7개 사업을 보면 하나의 기업입장에서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대출과정에서 확인을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각 정책자금별로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보면 중복되는 다수의 기업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기청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도 9개의 명목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구조개선사업 명목에서도 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시설자금도 받고 운전자금도 받고, 벤처명목으로도 받는 기업들이 수두룩한 현실입니다.

어떤 한 기업은 대표자 이름도 같은데 2개의 회사이름으로 또 대표자는 다르지만 전화번호가 같은 기업으로 해서 98년에 21억 원, 99년에 31억 7000만 원, 2000년에 22억7000만 원, 2001년에 18억4300만 원을 구조개선사업 명목으로 4년간에 걸쳐 무려 93억83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중소기업이기에 이 같이 막대한 자금을 구조개선사업 명목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

는 부지기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가 기금으로 중소기업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의 7개 명목의 사업에 있어서도 <선도기술개발보급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그 지원내역을 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인 정형외과병원에 2억2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선도기술개발보급지원사업은 업종 및 기업형태에 제약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걸맞지 않은 자금지원으로 판단됩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정작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노동부 관리의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중소기업 복지시설 융자금은 그 규모가 10억 원, 고용보험기금에서 무상지원으로 운용하는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은 20억 원, 여성근로자의 육아보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로조건개선사업인 직장보육시설 융자금도 20억 원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별 지원 기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동일한 관리기관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은 자금 자체가 방만하고 그것을 비슷비슷한 사업별로 쪼개서 그 관리주체들이 너무 다원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현실을 국무조정실이 파악해서 부처별로 사업별로 다양화돼 있는 중소기업 관련지원 정책자금을 전담하는 부서로 일원화시키는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이 정권 들어서서 만들어졌지만 각종 정책자금의 대출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을 뿐 실제적인 지원업무의 정책수립이나 조정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더 늦기전에 국무조정실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처별 조정능력을 발휘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본 위원은 지금처럼 정부가 각종 기금과 예산으로 정책자금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은 이제 그만하고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자금조성, 지원방식 등에 있어 혁신을 이뤄내서 적정한 규모의 자금으로 민영화 하든가 제3섹터 방식으로 조직을 만들든가, 투자조합을 중심으로 하든가 해서 벤처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 등 간단명료한 지원기금 종류로 기업들에게 각종 명목사업의 중복없이 다양하게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정출연(政出硏)연구활성화 대책비 활용방안은

□ 질의사항

2002년 정무위 예산심사 때 연구기관 활성화 대책비로 5개 연구기관에 193억2900만 원이 배정됐고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있은 후 183억3900만 원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삭감된 18억7800만 원은 연구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인건비 증가율 0%인 화학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해양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의 인건비 증액 재원(3%)로 활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활성화 대책비 183억3900만 원의 용처에 대해 아무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작년 예결위 기획예산처 장관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출연 연구소 인건비 지원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 2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배분기준 구상안으로 2001년도 경영혁신과제를 2001년에 마무리하지 못한 기관이 2002년 2월까지 완료한 경우 인건비 인상률을 3% 배정에서 4.6%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쓰거나 연구기관간 임금격차가 큰 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정도로 쓰기 위해 배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분 구상안도 정부 정책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경영혁신과제를 이미 앞서서 달성했던 연구원들에서 반발할 게 뻔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예가 있는데 누가 당해연도에 목표치를 도달하려 노력할지 의문입니다.

본 위원은 정부 예산집행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서야 어떻게 국민의 신뢰 특히 연구원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산 집행항목도 없이 예산배정이 된 것도 잘못이겠지만 이것은 국무조정실이 연구회를 통해서 소속 연구기관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쌈짓돈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연구회가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계획이 수립됐으면 밝혀 주기 바랍니다.

향후 2003년도 예산을 짤 때 또다시 이러한 집행항목 없는 예산안을 수립한다면 전액삭감 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5월부터는 각 정부부처에서 2003년 예산수립을 위한 각종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무조정실과 연구회는 2003년도 예산수립 시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은 공개로 뽑고 이사장은 밀실에서 뽑나

□ 현 황

<원장의 임면 절차>

원장의 임면은 공개모집(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하거나 연구회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회 이사장이 임면(법률 12조)하게 돼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세부 규정사항을 보면

-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원장심사위원회(시행령 6조)→이사회정관(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 38조)→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운영규정→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운영세칙
- ○추천에 의한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시행령 7조)→이사회정관(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 39조)→원장추천위원회 규정

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각 경우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 원장은 이사장이 임면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장의 임면 절차>

반면 이사장의 경우에는 법 23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합니다.

시행령 제14조는 연구회이사와 소관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국무총리에게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이하 필요한 사항은 각 연구회 정관으로 정하게 해 놓고 있고 정관(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 9조)에선 이사장추천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본 위원은 최근 각 연구회 제1기 이사장의 임기 3년이 만료되고 새로운 이사장들이 선임되는 과정을 보면서 1999년 1월 29일 만들어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얼마나 원칙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그간 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 우리 국가의 100년 대계를 만들어야 하는 연구기관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장임명과 관련해서 볼 때 이사장이 임면하는 연구원의 원장들은 공개모집이 가능한데 이사장직은 연구회 이사와 연구원 원장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해 국무총리가 임면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장의 경우에는 법 23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합니다.

시행령 제14조는 연구회이사와 소관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국무총리에게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이하 필요한 사항은 각 연구회 정관으로 정하게 해 놓고 있고 정관(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 9조)에선 이사장추천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장추천위원회 규정이 2001년 12월 19일 제정됐습니다. 법은 시행령으로, 시행령은 정관으로, 정관은 규정으로 절차를 위임해 놓고 있었는데도 이사장추천위원회 규정을 제1기 이사장 임기 만료시점에 되어서야 만들어놓고 2002년 2월 15일, 연구회 이사장후보 추천마감을 받아 2월 27일 경제 및 인문사회, 28일 기초, 산업, 공공기술 연구회 이사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사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법 제정시기에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원장을 통괄하는 이사장을 원장들이 뽑게 한 것도 문제이고 원장은 공개모집에 의해 뽑을 수 있도록 해놓고 이사장은 그렇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더욱 문제는 제1기 이사장 임기 만료시점에서 제정된 <이사회 추천위원회 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권위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사장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에서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권위는 모래성에 불과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1. 원장 3인이 추천해야 이사장 후보에 추천될

수 있어 이사장 후보의 추천을 규정하고 있는 9조2항은 먼저 후보추천을 위해 먼저 추천위 위원 3인이상의 연명으로 추천위에 추천할 수 있게 해놓아야 되는데 추천위원 즉 산하기관 원장들의 추천을 받아야 이사장이 될 수 있게 해 놓고 있습니다. 원장들을 통괄할 이사장이 통괄 대상인 원장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만 후보추천위에 추천 대상으로 선정되게 돼 있는 것은 모순입니다.

자기를 추천해 준 이사와 연구원 원장을 이사장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면직시키거나 할 수 있을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 국무총리의 입김으로 낙하산, 정실추천이 가능

또한 9조2항은 국무총리가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 단체추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설사 해당기관이 추천을 국무총리에게 했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가 추천을 하지 않으면 추천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장 선출과정에 국무총리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 낙하산 인사나 정실인사가 가능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3. 이사장후보추천위도 참여할 수 없는 당연직이사는 그만두어야

이사장 후보추천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기존 연구회 이사와 소관 연구기관 원장들인데 당연직 이사의 경우 각 연구회 관련 정부 부처의 차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3급이상의 소속공무원 주에서 지정된 자가 대리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규정 5조3항)

연구회를 이끌 이사장을 추천하는 회의에 당연직 이사인 국무조정실장이나 정부 부처의 차관이 참석하지 않고 대리출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은 행정행위가 위임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모법에도 없는 편법적인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고쳐져야 합니다. 그만한 열과 성의 없이 국무조정실장을 하고 차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임명절차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원장은 공개절차를 거치게 해놓고 이사장은 사실상 비공개로 해 추천인 자격을 이해 당사자들로 제한하는 것은 전문성과 경영능력 등과는 무관하게 정실로 임면될 수 있는 요식적인 구색만 갖추게 하는 절차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청보위원장 국무총리가 진짜 제청했나

□ 질의사항

국무총리의 청소년보호정책을 보호하는 청소년보호위원장은 청소년보호법 제29조 2항에 따르면 ①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②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를 전공한 자 ③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보호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④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문제를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승희 씨의 이력사항을 보면 도대체 4가지 해당 항목 중 어느 것에 이승희 씨의 자격이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을 국무총리가 대통령게 제청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이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주요 이력을 보면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부소장 1년, 새정치국민회의 여성정책전문위원 10개월, 새천년민주당 여성전문위원 2개월,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 여성정책비서관 2년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력 어디에도 청소년보호업무와 관련있는 실무경험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전문위원시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업무에 관여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법안과 관련된 업무를 했다면 모두가 다 실무경험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국무총리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권리이자 의무사항이 국무위원 등에 대한 제청권을 이렇게 스스로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 이러한 중앙 컨트롤 타워가 있는 한 계열사 간의 부당내부거래는 근절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부당내부거래의 근절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재계가 요구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무조건 규제나 제도를 철

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하여금 독점이나 과점으로 인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기회를 스스로 방지하도록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상도(商道)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보위 : 법규 위반 자격미달! 낙하산 인사!
이승희 위원장은 명예롭게 사퇴해야

- 지난 2월 19일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셨는데요, 이승희 위원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당시 언론보도와 시민단체의 평가를 보면 “청소년업무와 관련한 실무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전문가 등용이라며 자질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29일 청와대 인사 개편을 전후로 해서 무려 5명의 비서관들이 정부 부처로 내려가 낙하산 인사 논란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홍근 청와대대변인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이상환 정무기획비서관은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대곤 보도지원비서관은 2002월드컵문화시민중앙협의회 사무총장으로 △현정택 정책비서관은 여성부 차관으로 그리고 △여성정책비서관이었던 이승희 위원장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정권말기라고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무작위로 차출해 낙하산 인사로 계속 내려보낸다면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또 현정택 정책비서관이나 이승희 위원장처럼 전혀 관련 직무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차관이나 위원장으로 내려온다면 관련부처 공무원들에게 영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또 이로 인한 관련부처의 인사적체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 단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그 조항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청소년보호법 제29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2.5>
  ②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청소년보호의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2.28>
  1.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를 전공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보호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문제를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현 이승희 위원장은 이미 작년 2월에서 3월 사이 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공모에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 때, 원장 유력 후보군으로 현 한국여성개발원 원장인 장하진 충남대 교수, 신은숙 순천향대교수, 당시 이승희 청와대 여성정책비서관으로 압축되었는데 △당시 이승희 원장 후보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가 최종 원장을 확정하기 바로 전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사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 위원장의 이러한 행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스스로도 자신이 여성문제 전문가로서 여성관련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자리를 사퇴하고 자신의 전문분야와 무관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왔습니까? 이것이 바로 ‘청와대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아닙니까?
  2) 위원장의 여러 가지 경력으로 봤을 때 위원장은 여성문제 전문가이지 청소년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 여성정책위원으로 있을 때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또 여성 청소년의 매매춘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롯한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저술 및 정책수립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02.2.15 대

한매일 청보위 관계자는 “여성정책비서관이 청소년 업무를 다루고 있고, 이승희 비서관은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있을 당시 청소년 관련법 제정에 기여했기 때문에 실무경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3) 전임 위원장들의 경력과 비교해 보면, 강지원 1대 위원장은 검사출신으로 서울보호관찰소장을 역임했고, 김성이 2대 위원장은 대한적십자사 청소년적십자 자문위원・한국청소년학회 학회장・한국약물남용상담가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단순히 청소년 관련법 제정에 기여했다’ 또는 ‘여성정책비서관이 청소년 업무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끼워맞추기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사실상 청소년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고, 관련 법 제정에 일부 기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무경험이 있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위원장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청소년문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실무경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올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더 이상 자격시비와 낙하산 인사문제로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보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 다시 한 번 위원장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朴柱宣 委員

지구온난화협약대책 관련

- 지난해 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이 타결됨에 따라 EU나 일본 등은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비준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정부는 금년 상반기중에 교토의정서 비준의 국회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의 비준은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경제개발의 필요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업분야에 적잖은 부담을 주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 의)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경우 발생할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국무조정실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토의정서의 발효에는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함께 90년 선진국 배출량 중 55%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의 비준이 필요하므로 온실가스배출비중 45%이상의 국가가 비준에 필요하므로 온실가스배출비중 45%이상의 국가가 비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저지됩니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36.1%를 차지하는 미국이 이 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비준거부를 기대했던 일본이 참여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교토의정서의 발효저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의)

협상에서 온실가스의 감축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의 할당량을 좋은 조건으로 확정되도록 정부가 우리의 온실가스 할당량 책정시기를 적절한 시기로 유도하고, 규제대상 기체의 할당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 의)

우리는 이러한 대외적인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저소비형 제품의 개발에 더욱 힘써 이를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1999년도를 기준으로 대기오염 물질배출량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최저 32조 원에서 최고 60조 원으로 평균 45조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99년도 경상 국민총소득(GNI)의 6.6~12.5%(평균 9.6%)에 해당되며, 인구 1인당 연간 67만~127만 원(평균 97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대기오염물질별로는 질소산화물이 5조~14조 원, 이산화황이 8조~10조 원, 휘

발성 유기화합물이 7조~10조 원, 일산화탄소가 6조~8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미세먼지도 6조~18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질 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이번 조사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피해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고 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그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같은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종류와 피해정도에 대한 면밀한 연구분석과 대책, 그리고 피해보상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국무조정실의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질 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대기오염의 문제는 이제 단순한 환경의 문제를 넘어 경제의 문제요, 정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여러 부처가 대기오염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각 부처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일관성 있는 대응과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점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간 환경네트워크의 구성방안에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황사피해 방지대책 관련

- 대기 오염원 중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8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온 마당에 최근에는 황사의 발생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연평균 3.9일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황사 발생일수는 90년대 들어서는 7.7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27일을 기록하여 관측이래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는 벌써 서울지역에서만 황사가 12일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그 농도 또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질 의)

이처럼 최근 황사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그 농도 역시 짙어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질 의)

최근 정부에서도 황사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황사가 구제역의 발병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황사피해의 문제가 이미 심각하게 제기되었는데도 정부가 지금까지 황사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경위는 무엇인지 국무조정실장께서 그 이유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 의)

현재 전국의 160여개의 대기오염 측정소 중 90여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으로 각 측정소의 측정결과가 기상청으로 전달되어 기상청에서 분석결과에 따라 합당한 황사대비 특보를 발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황사대비 특보발령체계의 운영결과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 의)

현재 측정소에서 황사농도를 측정한 결과가 기상청으로 전달되어 특보로 발령되는 데까지는 2시간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의 경우에는 빠른 편서풍을 타고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황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측정소의 측정에서 기상청의 특보발령까지의 시간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 의)

또한 중국정부와 정보교환이나 기상위성 등을 활용한 황사발생 예보체계를 강화하여 황사로 인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정부와 황사발생관련 정보의 교류체계 실태를 밝혀 주시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황사는 중국 내륙지방의 사막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사피해를 막을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아울러 황사의 근원적인 대책은 중국 내륙의 사막화를 막는 것일 것이나 이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한중일 3국 간의 공조가 있어야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현재 한중일 3국 간의 황사대비 공조체제 구축현황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 의)

황사가 우리의 산업에 입히는 피해는 막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정밀기기산업 등의 경우에는 황사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황사로 인한 피해정도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시급히 피해측정시스템을 마련하고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적절한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 의)

국무조정실의 안전관리팀은 각종 풍수해와 산불 및 화재 등 안전관리를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9월 씨랜드 화재사고를 계기로 발족된 것으로 아는데 안전관리팀이 한시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고 설치근거도 미약하여 기능강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입장과 안전관리강화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 의)

또한 정부는 황사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황사특보의 발령과 함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 일사분란한 조치를 실시하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항공기 운항이나 국군의 경비태세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조정실의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마약류 근절종합대책 관련

- 최근 마약류의 밀반입이 급증하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올 1.4분기 중 대마초 139㎏, 히로뽕 2.5㎏ 등 143㎏(132억 원 상당)의 마약류 밀수가 사법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금액대비로는 작년 동기에 비해 43%, 적발량 기준으로는 2649%가 늘어난 것이며 3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분량입니다.

(질 의)

이처럼 마약류 적발량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은 마약류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마약류의 밀수가 대폭 늘어난 데 원인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마약류 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현재 마약류에는 마약과 대마,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 마약사범이 체포되면서 대마가 마약류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등 일부 마약사범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된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여 규제하면서 국민들에게 합당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대마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무엇인지 밝혀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하여 처벌하는 국가는 얼마나 되며, 대마의 흡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최근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비교적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마약류가 늘면서 소비층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사용이 청소년층으로까지 퍼져나갈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 의)

또한 최근에는 마약류 함유물질의 오·남용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의약품관리는 의료기관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국무조정실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질 의)

건강한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약류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또한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정부에서는 마약사범이 범법자이면서 동시에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는 점을 인식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방지 종합대책 마련

- 업무보고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불법체류자는 지난 99년 이후 매년 약 40%씩 증가하여 2

월말 현재 26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에는 국제적인 행사가 많아서 년말에는 3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외국인 범죄의 증가로 사회 안정성을 해치고, 근로 및 생활환경 등이 열악한 관계로 국제적 인권문제의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 의)

이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고 있는 것은 출입국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 의)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정상적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밀입국한 경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현재 26만여 명의 불법체류자 중에서 밀입국자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기 바라며, 밀입국을 근절할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 의)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의한 집단행동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생한 외국인들의 집단행동 현황을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일본에서는 법무성이 '재류 특별허가'의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일정한 요건의 불법체류자를 구제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특정 불법체류자들의 신분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이 각종 명목으로 국내에 들어와 사실상의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이 두려워 제대로 항의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가 있는 만큼,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구제하여 생활여건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 일본은 얼마 전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한일 양국 간 갈등을 유발시킨 데 이어, 최근 다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왜곡하여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공동개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여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일본정부를 비롯한 일부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일본인들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에서도 역사기술은 국내문제라는 일부 일본인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역사기술의 관련자로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많은 일본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질 의)

우리는 독도문제를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땅인 독도의 영유권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재론할 가치가 없는 엉터리 사실을 기술한 역사의 왜곡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와 정부의 대처방향에 대해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 의)

일본인들의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한일간 역사공동연구가 절실하고 이를 역사교과서에 반영토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한·일 간 역사공동연구의 준비상황을 밝혀주시고, 향후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질 의)

이 한·일 양국의 역사공동연구의 성과가 양국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국의 역사교과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실현시킬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공계 기피현상 대책 관련

- 최근 학생들의 이과공부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국가 경쟁력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를 보면 자연계 비율이 98학년도 42.4%에서 2002학년도에는 26.9%로 줄어드는 등 이공계열의 기피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 의)

이공계 지원자가 감소한 원인으로 대입 교차지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공계

출신자들이 보수나 승진 기회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직업의 유연성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정부의 대책으로 교차지원의 규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과계열 기피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실효성 확보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학생들의 이과공부 기피현상은 대학원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쳐 대학원 지원자 중 상당수가 학부 교양과목 수준의 물리문제도 풀지 못하고 심지어는 대학원 학생이 급감해 외국 유학생으로 연구인력을 채워야 할 형편이라는 것이 교육계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는 일부 사회변화의 불가피한 영향도 있겠지만 정부가 인적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지 못하고 사회구성원들의 합당한 기회균등을 만들어 내지 못한 데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공계열의 학문의 진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趙在煥 委員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석에 관한 질의(연구회)

연구회의 보고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장, 재경부차관 등의 당연직 이사들의 이사회 출석률이 최고 100%에서 최저 78%로 대체적으로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 참석으로 되어 있는 국무조정실장의 경우 대리출석이 8차례나 되어 실제 출석률은 55%에 지나지 않고 78%로 가장 낮은 출석률을 기록한 정통부 차관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석한 회수는 9번으로 출석률이 50%입니다.

- 게다가 18번의 회의 중 9번의 회의는 서면결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연직 이사의 출석률은 지극히 저조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 국무조정실장은 물론이며 각 부처의 차관들은 참석해야할 회의만도 한 달에 수십 차례에 이르는 등 매우 바쁜 일정에 쫓기는 입장인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직 이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 차관에게 당연직 이사직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내실있는 이사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국무조정실장께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연구환경 관련에 대한 질의

각 연구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연구원들은 수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 수립에 기여를 하는 등 외관상으로는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많은 외부용역 사업을 수주하고 산학 협동연구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대외적으로는 국책연구기관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가져오는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 연구원 1인당 과제가 너무 많아 양질의 연구성과를 생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책임자급 연구원들은 약방의 감초 마냥 여기저기 이름이 안 걸린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양준석연구원은 2000년 한 해 동안 '한-칠레 FTA 정부조달 협정 외교부안 검토', '세계화의 확산과 APEC의 대응방안' 등 무려 20여 개의 과제를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통일연구원의 박영호 연구원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완료한 과제가 다른 연구원에 비해 훨씬 많은 1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참여를 한다면 깊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반대로 이들이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것이라면 젊은 연구원들의 땀과 성의로 일궈낸 연구성과에 이름만 얹어놓는 이른바 '무임승차' 행위가 된다고 보는데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처럼 책임자급 연구원들이 도저히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현상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본 위원은 각 연구원의 활동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외형적 활동을 중시하고 질보다는 양을 추구하는 경향을 띄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현 상황에서는 지나

치게 경쟁원리를 강조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회의 방침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즉 연구원의 자질 향상과 연구원의 자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참여 프로젝트 수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소관연구기관 평가편람을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현장의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가 편람을 보면 모든 평가 대상을 동일 선상에 놓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프로젝트별로 할당된 예산, 투입 인원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의 차이가 성과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이 많으면 성과도 많은 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연구성과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요소투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밝혀 주기 바랍니다.

퇴직금 충당금 적립과 관련

경제사회연구회 각 연구원의 퇴직금 충당금 적립률을 보면, 해양수산개발연구원은 적립률이 103.3%로 초과 적립한 상태인데 비해 보건사회연구원은 0.6%, 국토연구원은 2.91% 등으로 매우 낮은 상태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같이 연구원 간에 퇴직금 충당금 적립률이 큰 차이가 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문제는 대체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이 낮은 연구원들이 자체 수입도 적은 것으로 분석되는 점에 있는데 급격한 구조조정의 후유증이란 측면이 강하지만 퇴직금 충당금을 하루속히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며, 연구원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연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로토복권 도입에 관한 질의

- 지난 90년까지만 해도 단 한 종류에 불과했던 복권이 현재는 10개 공공기관에서 추첨식과 즉석식을 합쳐 모두 20종류가 발행되어 2001년에는 전년에 비해 1천억이 늘어 약 6000억 원어치가 팔린 것으로 집계됩니다.

새로운 복권이 계속 등장하면서 기존복권의 판매율이 20~30%에 그치자 노골적인 덤핑까지 성행하고 있고 발행량의 3분의 2가량이 팔리지 않은 채 버려지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 현재 복권시장은 과당경쟁상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로토복권의 발행을 둘러싸고 지난해 12월 27일 부처 간 협의를 한 바 있는데 이때 부처 간 의견대립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날 논의의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 문화관광부에서는 토토복권이 정착되기도 전에 로토복권이 도입되면 입게 될 타격과 이미 토토 복권 시스템 구축을 위해 1200억 원이 투자됐는데 1년도 안 돼 로토복권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재원의 낭비요, 중복투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감사원에서 건교부와 문광부 등 부처를 대상으로 중복투자여부를 감사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 로토복권이 도입되면 건교부 등 7개 부처는 가만히 앉아서 1년에 몇백억 원에서 몇천억 원의 배당수입을 올리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 각 부처는 복권이익금을 공익을 위해 쓴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익목적이라면 예산에 계상하면 되지 굳이 준조세적인 새로운 복권방식을 도입하여 국민의 호주머니를 축내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로토복권은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의 복권시장 60%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된 복권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로토복권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외국의 경우 로토복권을 발행할 시 주민의사를 묻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사업자 선정까지 했으면서도 공청회 한 번 안 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내에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복권시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하였다는데 그 이

후에 진척된 사항이 있는가?
- 그동안 실무협의과정에서 인쇄식복권에 대한 규제 필요성, 최고당첨금의 상향조정 등의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 로토복권 도입과 관련된 얘기는 없었는가?
- 로토복권 도입 문제도 결국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가?
- 외국의 경우 복권발행에 대해 대부분 총괄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찰법규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 복권발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건설촉진법 등 10개 개별법률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동법의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규정을 통해 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복권시장의 확대가 전망되고 로토복권의 도입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복권사업 전반의 정비를 위해 통합복권법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월드컵 지원자금 관련 질의

- 월드컵 관련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초 은행들이 조성한 1조 1000억 원의 자금 중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4월 6일 현재 겨우 2908억 원에 불과하여 목표 대비 26%에 그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대출 조건이 특별히 까다롭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업체 중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풍부해서 지원 자금을 이용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출이 부진하다고 보는가?
- 월드컵 관련업체들이 자금을 융자해 주겠다는데도 자금사용을 안하는 것을 보면 자금문제가 아닌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니 지금 시점에서는 자금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 붐 조성이 전혀 되질 않아서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지장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물건이 안 팔리니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할 의욕도 안 생기기 때문에 자금 소진율이 26%에 머무는 것 아닌가?
- 월드컵이 불과 50여 일도 안 남았지만, 업계에서는 월드컵 열기가 조금도 느껴지질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가?
- 현재 월드컵 관련 기념상품의 매출 규모와 분기별 매출신장율 등을 파악하고 있는가?
-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매출실적이 지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월드컵 열기가 부족하고 FIFA에 지급할 로열티로 인해 상품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념품 판매가 지극히 부진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는가?
- 본 위원은 대출부진의 원인이 사업부진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무조정실은 '정부지원 종합대책'에서 월드컵 관련 316개의 유망중소기업을 지정하여 기술개발·디자인 지원 및 판로확보 지원 등 지원시책 보완한다고 밝혔지요?
- 그런데 관광명소나 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된 기념품 판매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실례로 고속터미널에 있는 기념품 판매소의 경우, 매장 면적의 절반 이상이 휴대폰 판매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복궁에 있는 기념품 판매소는 몇 달째 문을 닫고 있는데 기념품 판매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았는가?
  (안해봤다고 할 경우)
- 실태파악을 해보시고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월드컵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에 월드컵 관련 홍보물과 기념품 등을 전시할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월드컵이 불과 5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황사대책 관련 질의

○ 지난달 말 최악의 황사로 인해 피해를 본 이후 내놓은 대책이 '황사경보제'이죠?
  황사경보제는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 있고 각 단계별로 대처요령 등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황사가 발생했을 때 3단계 조치 가운데 주의보와 경보를 뛰어넘어 중대경보를 발령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상당히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 중대경보부터 발동할 게 아니라 미리 예보를 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대처를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 현재 황사경보체제는 기상청의 황사예보를 참조해 지역 대기오염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발령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리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항상 황사가 코 앞에 닥쳐왔을 때에야 경보가 발령되고 시민들에게 통보되는 것 아닌가?
- 황사의 규모와 통과지역 등을 미리 알 수 있는 정교한 예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필요한 장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는가?
- 또한 시민들이 황사경보에 따른 행동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반상회나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황사 중대경보가 내려지자 학생 보호조치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겨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학교에 따라 수업을 하는 학교, 휴업을 하는 학교 등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경우 542개 초등학교 중 316개교는 단축수업을, 226개교는 정상수업을 해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체육수업 및 외부실습을 하는 등의 안이한 대응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 또한 황사 발생 2일째의 경우 소강상태를 보이자 중대경보를 해제했다가 다음 날 다시 심해지자 재차 중대경보를 발령했지만 학생들의 등교시간인 7시가 다 되도록 휴교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 이처럼 우왕좌왕 하는 것인가?
- 교육당국은 황사발생 각 단계에 따른 대응책을 통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 황사문제는 우리나라만 대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과의 공조가 필수적인데 이들 국가들과 공조해서 대책마련을 한 실적이 있는지?

- 황사발생이 사전에 예보되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중국당국이 황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하며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도 고작 일기예보나 인터넷 정보만을 알려오는 수준이라는데 당국의 외교적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 앞으로도 두세 차례의 황사발생이 예견되는데 각 부처별로 따로따로 대처해서는 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황사로 인한 피해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책기구를 일원화해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林鎭出 委員

월드컵 준비상황 관련

(질의 1)

현재의 우리 나라의 월드컵 열기는 자국의 16강 진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아닌가?

※ (표 1) 참조

(질의 2)

만약 한국이 16강 진출에 실패하게 되면, 그 이후 한국에서 벌어지는 경기는 외면을 받아 성공적 월드컵 개최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질의 3)

이는 마스코트 홍보 등 대회 전체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노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 같은데?

(질의 4)

이런 마스코트 인지 부족으로 월드컵과 관련한 경제적인 효과도 못 보고 있는 것 아닌가?

※ (표 2) 참조

(질의 5)

국무조정위는 한국의 16강 진출여부에 상관없이 대회자체를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전반적인 열기 진작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표 1) 한·일 월드컵 경기 티켓 예매율 비교

□ 2차 입장권 판매 2001년 9월부터 계속

- 한국 : 한국과 중국경기를 제외한 외국경기 예매율 50%에 머무르고 있음.
- 일본 : 이미 2001년 12월에 판매분 매진

(표 2) 월드컵 특수 노린 경제적 효과 미흡

□ 월드컵 상품 사업 한·일 간 극명 대조

※ 월드컵 상품 사업
국내 중소기업들이 직접 상품제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월드컵 개최국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

- 한국 : 총 판매량이 전체목표액(3000억 원)의 5%에도 못 미침
- 일본 : 총 판매량이 8000억 원을 상회 당초 1조 5000억 원의 목표액을 3조 원으로 상향 조정

□ 2002 한·일 월드컵 기념 주화 판매
- 한국 : 28만세트를 발행했지만 예약률이 70% 대에 그쳐
- 일본 : 구입 신청자가 총 발행량인 40만세트의 10배를 넘어 추첨으로 구입자 정함

복권조정위 관련

(질의 1)

지난 국정감사 시 본 위원이 복권시장 과열과 국무조정실 산하 복권조정위원회 폐지와의 상관관계를 지적했다.

(질의 2)

이러한 지적이 수용되어 2002년 국무조정실 예산에 복권조정위원회가 신설되지 않았는가?

※ (표 1) 참조

(질의 3)

하지만 복권조정위원회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복권조정위원회의 신설을 촉구하는 기사가 많은데 이는 국무조정실이 복권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소홀했기 때문인가, 홍보 부족인가?

※ 4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 참조

(질의 4)

복권조정위원회가 신설된 이후에 발행방법, 최고 당첨금 구조, 판매 수수료율과 관련한 조정이 있었는가?

(질의 5)

복권조정위는 신설 취지에 맞게 복권시장 조정을 복권 남발과 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복권의 사회적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표 1) 복권조정위 폐지 이후 복권시장 과열 양상

□ 복권조정위 폐지(1998년 12월)이후 복권 시장의 폐해
- 복권시장 과당 경쟁으로 기금 적립률 떨어짐
- 경쟁적인 고액 당첨금 내걸기로 오히려 당첨확률은 떨어져 혜택의 수혜자여야 할 서민들에 대한 수혜가 적어짐
- 기금이 부실한 정부부처에서 손쉬운 기금 마련 위해 신규로 복권시장 진입 노림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 관련

(질의 1)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추진하던 제주도내 영어공용화가 무산돼 외국자본 유치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질의 2)

외자 유치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모두 4조 7000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 (표 1) 참조

(질의 3)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회에는 외자유치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질의 4)

또한, 외국투자가들이 제주도에 대한 투자 매력을 느끼는 요소인 '내국인 면세점'이 금강산에도 설립 추진된다는데 이는 제주도의 투자 매력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비슷한 지원시책을 중복해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 5)

또한, 제주자유도시는 현재 건설추진 중인 동북아의 다른 자유도시와의 차별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는 정부가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총괄하여 현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콘크리트 위주의 하드웨어 개발에만 치중하기 때문 아닌가?

※ (표 2) 참조

(질의 6)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컨셉트를 분명히 하여 동북아 타 자유도시와의 차별성을 살린 '제주형의' 국제 자유도시가 건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표 1)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필요한 재원
- 공공부문 투자 : 3조 4000억 원
- 민간자본 : 1조 3000억 원
- 당장 올해 필요한 예산 : 총 500억 원

⇒ 현재 확보된 자금은 21억 원에 불과

⇒ 제주도내 영어공용화 무산으로 외자추진에 문제가 생겨 향후 자금 확보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

(표 2) 동북아 국제자유도시 추진상황
- 싱가포르와 홍콩 : 이미 관광 이미지 형성 성공
- 필리핀 수빅
- 일본 오키나와(30년간 67조 원 투자)
- 중국 상하이와 푸등

⇒ 국제 자유도시 추진 중

⇒ 동남아의 주요국가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

하는 만큼 제주의 특성과 이미지를 살린 프로젝트와 차별화된 모습이 성공의 관건이지만, 중앙집중식 백화점식 프로젝트 개발로 차별화 미흡

○李訓平 委員

황사문제 관련

최근 40년만에 최악의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초등학교가 휴교를 할 정도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황사피해 최소화를 위해 '황사경보제'를 도입하였지만 준비와 홍보부족으로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황사경보전파방식은 근본적으로 미리 정확한 황사의 규모와 오염도의 정도를 예측함으로써 황사의 등급을 메기고 이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미리 전파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하는데 '뒷북치기식'경보에 그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1. 지난 주 황사발생 시 '황사경보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이를 받아들이는 기관들에서 혼선을 빚으면서 초등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일사불란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체계적 시스템운영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2. 이번에 마련된 '황사경고제'의 경우 그 기준치를 단순히 미국의 기준치에 두배를 더한 수치로 책정함으로써 기준치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황사경고제'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 기준마련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매년 서울의 4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는 중국은 지금은 한반도의 4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사막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중국도 나름대로 황사 퇴치를 위하여 10년 계획을 수립하고 생태복원을 위한 조림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중국의 처사만 믿고 긴 세월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황사의 진원지는 중국이지만 그 피해는 한국과 일본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한·중·일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3. 이미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생태복원사업을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키로 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항구적 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3국의 협력사업은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공동노력 방안들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4. 황사의 영향으로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황사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농작물에 미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해액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총기사건 관련

최근 총기탈취에 총기를 사용한 강도사건 등 강력범죄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총기소지가 금지되고 있는 나라에서 불과 3개월 동안 전국에서 총기로 무장한 은행강도사건이 5건이나 발생했지만 당국은 관리중인 35만 자루의 민간인 총기현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 10만정이 넘는 불법총기류에 대하여는 파악조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에서 불법총기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고 수입품 암시장에서 얼마든지 돈만 주면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현실에서 현재와 같은 총기류 관리체계로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총기관련사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내의 민간인 총기류 보유실태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고 총기류 구입과정을 철저히 검토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강력사건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업무의 특성상 금융기관은 강력범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처리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경비망 구축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을 감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체경비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정부에서 전국 금융기관의 경비에 대해 실시한 안전조사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자체경비에 소홀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사전지도와 함께 엄격한 처벌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3. 금융기관을 대상으로한 강력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정부차원에서 유사시의 인명피해를

줄이면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적극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감청증가대책 관련

수사기관에 의한 전화·전자메일의 감청건수가 2884건으로 지난해보다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사생활보호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교신방법이 더욱 교묘해지기 때문에 수사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당국에서도 이동전화, 전자우편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는 해명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통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청을 허락한 법원의 영장발급건수는 1359건으로 15% 가까이 줄고 사후에 영장을 발급 받은 긴급감청의 경우도 125건에서 69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개인통신자료 요청건수는 재작년 16만 건에서 지난해 27만 건으로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관의 개인통신자료 요청건수가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사생활침해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2. 긴급감청이 되어야 하는 수사목적은 밝혀지지만 지금까지 감청이 수사목적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감청건수의 증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감청이 수사결과에 대한 기여도를 밝혀 불필요한 감청을 줄여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3.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제적 테러단체들의 국내 활동이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는 이들 외국인으로 범죄에 불가피하게 감청이 필요한 경우 외교적문제와 전문인력 확보 등에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安大崙 委員

연구 자유권 박탈 관련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 최근 국가적 현안으로 급부상한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및 KBS 주최로 열려던 '발전소 민영화 관련 토론회'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석하려다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연구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요?

○張泰玩 委員

월드컵 준비상황에 관한 질의

○ 월드컵 행사가 앞으로 46일 남았습니다. 월드컵 행사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외국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의 얼굴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월드컵을 치르는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우리나라 사정을 잘 모르고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목적지까지 안내하겠다고 제의한 뒤 일반택시로 40달러면 충분한 요금을 2배 가까운 70달러에 바가지를 씌우며 일반택시가 더 비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가용 밴으로 이동함으로써 신변안전은 물론이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도 보장 될 수 없는 조직적인 호객행위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외국인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월드컵행사로 국가의 위상을 드높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적 이미지만 실추되고 있습니다.

(질 의)

세계적으로 좋은 시설의 국제공항을 만들어 놓고 입국장에서부터 망신스러운 우리나라의 도덕성과 국민성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국제적인 행사에 대처하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선진국민의식과 질서 및 도덕성을 어떻게 얼마 남지 않은 국제행사에 대비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현황에 관한 질의

○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5월 초에 약 51명의 인원으로 설립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 의)

그런데 그 예산이 350억 원인데 지금 현재 73억 원만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간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國務調整室長 金昊植

(徐相燮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재외동포법과는 별개로 브로커 연계방지를 위해 조선족에 대한 문호 확대, 입국·취업비자 발급 등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음

○ 우리정부는 중국동포가 처한 역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중 수교 이후 중국동포에 대하여 꾸준히 문호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작년까지만 해도 50세 이상인 중국동포에 한해 친지방문을 허용하던 것을 올 7월부터 45세 이상으로 하향 확대할 예정이며 65세 이상인 동포는 국내에 친지유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금년내에 친지방문 범위를 40세 이상으로 하향 확대할 예정이고 올4월부터는 우리국민의 외국인배우자(주로 중국동포들)에 대하여 국내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동포에 대한 배려 정책을 펴 오고 있습니다.

○ 일부단체 및 중국동포들이 주장하는 자유왕래 허용이나 급진적인 문호개방은 사회·경제적 측면,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중이며 점진적으로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사 문제와 관련하여

① 부처간 업무분장을 미루다 태풍 등과 같은 「특보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② 4월 8일 환경부에서 시행한 황사경보제를 기상청으로 바꾼 것은 졸속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③ 향후 황사발생 증가가 예상되므로 조속히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정부는 그동안 인공위성 등 기상정보에 따라 기상청에서 황사예보를, 황사에 따른 오염도 측정이나 황사피해 저감대책 등의 업무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 최근 황사발생일수와 농도가 심해짐에 따라 지난 3월 22일,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협의회 구성과 황사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번 황사발생에 대처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황사 예·경보를 위해서 기상청은 인공위성 사진분석 등을 통하여 황사 내습여부를 미리 발표하고, 환경부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측정치를 기준으로 황사경보를 발령하는 체제를 4월 6일부터 시행한 결과 황사예보와 황사경보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 지난 4월 10일,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 황사예보 및 황사특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여, 1~2일 전에 황사예보를 발령하고, 황사농도를 분석하여 적어도 3~4시간 전에는 황사특보(정보, 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국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앞으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연구작업을 통하여 황사의 정량예보 모델과 황사특보 모델 등을 개발하여 신뢰성·객관성을 확보한 기준치를 마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황사에는 인체에 유해한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고 미세먼지 형태로서 호흡기관이나 폐기능이 약한 어린이·노약자 등에게 호흡기 질환이나 안질 등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 황사현상으로 인한 농작물의 직접적 피해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으나 농작물의 광합성 작용장애와 비닐하우스 투광율 저하로 생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 가축의 경우 호흡기 장애 및 안질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 산업분야에는 자동차·선박 등 도장작업, 초정밀 광학기계 제작공정상 불량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 그러나 황사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적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피해를 계량화하기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칠레 FTA, 한·일 FTA 등을 예로 드시면서 경제분야 주요현안의 부처 간 이견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고, 정책조정기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범정부적인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다양한 조정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정전반에서 다루어야 할 포괄적인 경제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 「경제장관간담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책조정을 하고 있으며,
-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위원회에 국무조정실장이 모두 상시멤버로 참석하여 부처 간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기후변화협약, 부품소재산업 육성, 국가정보화 추진 등 특정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특히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FTA 체결과 같은 경우는 그 추진과정에서 정부내부 조정절차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이 농민 등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와 이를 통한 공감대확산이라 하겠으며
- 정부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FTA 체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활성화대책비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용도와 집행계획, 내년도 예산에 계속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금년예산에 반영된 184억 원의 출연연구기관 활성화대책비는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 재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연구회에서 동예산의 집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오는 5월 연구회별 정기이사회에서 확정한 후 연구기관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 내년 예산에도 출연연구기관 활성화대책비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구회 이사장 선출과 관련하여 3명 이상의 연명에 의한 이사장 추천, 당연직이사의 대리참석 허용, 회의의 비공개 등의 규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음.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서 연구회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사장 후보를 이사 및 연구원장이 연명으로 추천토록 한 것은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자격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신중하게 추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당연직이사의 경우 3급 이상 공무원의 대리참석 허용은 국정현안 업무수행상 부득이하게 당연직이사가 이사장추천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비공개회의 가능 규정은 추천위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후보자를 심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회의의 공개·비공개 여부는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조정실에서 화옹호 방조제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간의 이견을 조정하지 못한 이유와 방조제공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 화옹호 방조제 사업과 관련 '91 사업추진이후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수질보전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어, 수질개선기획단에서는 관계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여 지난 '99년 3월 23일 수질개선에 관련된 기본방향을 확정하여 환경부·농림부 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하는 등 관계기관의 이견에 대해 협의·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 이렇게 조정된 기본방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및 경기도 등이 수질보전대책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검토·협의 및 보완절차를 거쳐 지난 4월 2일 환경부가 주관하여 농림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러한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선 환경기초시설 완비를 주장하면서 끝막이공사 중지를 요청함에 따라 수질개선기획단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2002. 3. 6)를 한 바 있으나

○ 방조제 끝막이공사의 시기적·기술적 특성과 추가 비용산정, 해수유통의 효과 등 전문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전문성과 권리를 가진 시행기관이 타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 앞으로 화옹호와 관련하여 수질오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부가 주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수질보전대책을 관계부처

가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확정된 수질보전대책에서와 같이 상류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유지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화옹호 수질보전대책 주요내용

□ 기본방향

○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상류유역 대책과 호내(湖內) 수질정화대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담수화 개시 이전인 2007년까지 완료

○ 상류유역 대책의 경우 화성시가 주관하여 양여금 및 지방비로 추진하고, 호내대책은 농업기반공사가 화옹호간척사업비(농지관리기금)에 포함하여 추진

○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경인지방환경관리청 주관으로 관계기관 및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수질보전대책협의회」 설치·운영

○ 수질보전대책은 그 추진성과 등을 평가 보완하여 원칙적으로 3년마다 연동대책을 수립·추진

BBC의 노근리사건 방송관련 질문에 대한 지난번 서면답변에 대하여 유감이라고 하시면서, 관련자료 확보 후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 확인하고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 노근리사건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양국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양국이 15개월 동안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현재는 위령사업과 장학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BBC에 방영된 사격명령관련 자료는 노근리사건 조사시 이미 검토한 내용으로서, 한·미 공동조사결과 이러한 자료들이 노근리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노근리사건에 대한 재조사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嚴虎聲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 등의 영향력 행사로 인하여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화옹호 상류유역 및 호내대책 개요

(단위 : 백만원)

대 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사업주체 (재원)
계			147,554		
상류유역대책	소 계		89,799		화성시 (양여금) 53,363 (도비) 14,954 (시비) 21,482
	하 수 처 리 장	2개소(31천톤/일)	51,300	2002~2005	
	하 수 관 거	66.27km	21,761	2002~2006	
	마 을 하 수 도	15개소	5,958	2003~2007	
	저 장 액 비 탱 크	200톤×119개소	2,380	2002~2006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1개소	8,400	2003~2007	
호내대책	소 계		57,755		농업기반공사 (농지기금) 57,755
	인 공 습 지	116ha	47,907	2004~2007	
	수 초 저 류 지	49.1ha	3,715	2004~2007	
	유 입 부 침 강 지	95ha	5,869	2004~2007	
	인 공 식 물 섬	5개소(15조)	264	2004~2007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연구회체제 도입 이후에도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으나,
-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는 연구회체제 도입이후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연구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회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수를 3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현행 연구회 이사회는 총 12명 중 민간이 7명이고, 정부 측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정부 측 이사 5명 중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차관은 전 연구회 이사로 참여하며 그외에는 연구사업과 관련이 높은 3개 부처의 차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연구회 이사회에 관련 정부 측 이사가 참여하는 것은 연구기관의 연구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의 지적은 연구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체제는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국내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 정착금 지원, 거주지에서의 생활보호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 입국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현재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의 보호·수용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완공계획으로 시설 증축 중에 있습니다.

○ 또한 탈북자문제는 입국, 신문조사, 사회적응교육 및 거주 정착지원, 사회편입 후 신변보호등 단계별로 정부 부처 간 분담·협력을 통해 보호관리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시로 관계부처간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인 취업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 기 시행 중인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취업보호제」를 강화하여 나가는 한편, 구인·구직 정보망 구축을 통한 직장알선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 아울러 지자체 및 민간후원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협력체제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정착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종합적 관리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柱宣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대책과 관련하여
   ① 교토의정서 비준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 협상에서 감축의무를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대책,
   ③ 에너지 저소비형 제품의 개발 및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견해 등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①에 대하여>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국가(Annex Ⅰ국가)는 아니므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더라도 당장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다만 향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을 지게 될 경우 경제성장률 및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높은 우리 산업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이 아니더라도 에너지절약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관련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수년 전부터 다양한 시나리오 및 그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 미국이 제안한 새로운 방식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작업을 수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 고>

제2차 의무이행평가기간(2013~17)에 1995년을 기준연도로 배출량을 5% 감축할 경우, 우리나라

의 실질GNP는 2015년에 0.75%(약11조 3000억 원), 2020년에 1.51%(약22조 8000억 원) 감소 예상 (2000, 에너지경제연구원)

<②에 대하여>

○ 협상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정부는 연구기관들과 협조하여 시나리오 설정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감축량 및 감축시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축방식 등에 관한 적정 의무부담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이를 토대로 멕시코, 브라질 등 우리나라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의 국제회의 개최 등 공조를 통해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협상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참고> 우리나라 개최 관련 국제회의

* 한·멕시코 개도국 의무부담 관련 세미나 (5.6~7, 서울)
* 개도국 감축방안에 관한 국제회의 (7.5~7, 서울)

<③에 대하여>

○ 이번 「기후변화협약 제2차 종합대책」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관건인 에너지절약에 대한 다양한 시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 우선 기업체와의 자발적 협약(VA) 체결을 2001년 368개 사업장에서 2003년 600개 사업장(대상업체의 84%)까지 확대하고 ESCO사업의 융자자금 규모를 2001년 924억원에서 2002년 99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교통혼잡구간을 정비하고 지하철, 도시철도 건설 추진, 사업용차량의 공회전 규제 등을 통해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 건축물 단열시공을 의무화하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품목을 2001년 9개에서 2004년 총15개로 확대하는 등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절약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편, 온실가스의 대부분(82.5%)은 에너지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특히 철강, 자동차, 발전,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정보통신, 기계 등 에너지저소비형 업종의 비중이 1990년 32.6%에서 2000년 56.6%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개선되도록 정보통신 및 벤처기업 육성정책 등을 통해 이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사회적 비용과 피해를 지적하시고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종류와 피해정도에 대한 연구분석과 대책, 그리고 피해보상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감소, 구조물 부식 등과 같은 물적피해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크므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피해에 대한 대책수립에 있어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종류와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연구가 우선되어야 하며,

-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환경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도권대기질개선기획단"이 중심이 되어 관련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음

○ 또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작자동차나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기존의 자동차를 전기하이브리드차, 천연가스차 등 무·저공해 차량으로 바꾸어 나가고 청정연료의 공급도 대폭 늘려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기오염 피해저감대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기오염문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국무조정실의 대책과 정부 간 환경네트워크 구성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기오염문제는 환경부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에너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교통정책과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각종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따라 금년 4월에 "수도권대기질개선기획단"(단장 : 환경부차관)을 발족하여 대기오염과 관련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 앞으로 기획단의 실무적인 연구성과를 기초로 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국무조정실의 조정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대기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한 부처 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황사 피해 방지대책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황사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농도가 짙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황사발원지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로서,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현상, 중국서부와 내몽골 고원의 고온건조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 중국의 산업화 진전과 산림남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중국 내륙의 사막화가 가속됨에 따라 황사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농도가 짙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① 중국내륙 사막화 속도

- 60년대이전 매년 1,560㎢
- 70~80년대 매년 2,100㎢
- 현재 매년 2,460㎢ (서울 면적의 4배)

② 몽골국토의 90%가 사막화 위기

- 과거 30년 동안 초지 69,000㎢ 감소 및 식물종수 1/4감소

<황사가 구제역의 발병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정부의 황사 종합대책이 지금까지 마련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정부는 그동안 황사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 황사발생에 관한 D/B구축, 인공위성 황사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황사 이동경로 파악체제 구축, 한·중·일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조사사업, 중국서부 생태환경복원사업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바와 같은 구제역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 8월,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에서 "황사에 의한 구제역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가 있음에 따라,

- 금년의 경우 농도가 짙은 황사 발생 이전인 2.25, "황사발생시 축산농가 관리 수칙"을 제정·배포(40만부), 홍보하였고
- 황사 발생시마다 축산농가 주변의 황사제거와 소독실시 등 특별방역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정부내에 마련된 「황사대책협의회」를 통하여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황사 특보 발령체계 운영결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현재의 정부 황사 예·경보 체계는 기상청의 예보와 환경부의 경보발령체계를 지난 4.10부터 기상청으로 일원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황사 예·경보는 일본의 「정지기상위성」, 미국의 「극궤도 기상위성」 등을 통한 자료분석과 중국내의 황사관측현황 및 기상청의 황사 선도관측망(3개소), 환경부의 대기오염 측정소(16개소)의 자료를 종합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 측정소 : 162개(지방환경청 45, 시·도환경연구원 117)

-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황사 예·경보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를 위해 앞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상청의 선도관측망을 3개소에서 16개소로 늘리고, 환경부의 대기오염 측정소를 기상청과 On-line으로 연결함과 아울러

- 황사 상층분포를 감지할 수 있는 「라이더(lidar) 관측망」을 1곳에서 6곳으로 확충하는 한편,
- 중국과 협력하여 중국내에 5개소의 「국외관측망」을 신설하는 사업을 협의 추진하는 등 황사 예·경보 체계를 더욱 강화·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황사 예보에서 황사 특보까지의 시간단축방안을 물으셨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황사 예·경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마무리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중국정부와 정보교환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인바, 현재 중국 정부와 황사발생 관련 정보의 교류실태와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 중국과 황사관련 정보교류는 중국내 황사 관측현황을 국제기상전문을 통해 매3시간마다 수집·분석하며, 이 자료를 토대로 황사 추적모델과 대기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황사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한·중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나감과 아울러

- 금년 4월중 중국에 기상전문가를 파견하여 황사발생지역의 황사농도, 강도, 이동경로, 지속시간 특보 등 관련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과 함께
- 우리나라 기상청의 황사 전문가를 중국의 기상국에 파견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등 한·중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황사피해의 근원적 예방대책과 한·중·일 공조체제 구축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 황사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황

사발생 최소화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황사문제를 3국 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장거리 이동물질 공동 조사사업('02~'06)을 실시 중이며
- 동북아지역의 사막화 방지 등을 위해 「중국 서부지역 생태환경 복원사업」에 대한 중국측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일정과 3국간 역할 분담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지난 2000년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중국 서부 5개지역에 대한 조림사업('02~'05, 500만 불)과 내몽골의 방풍림 조성을 위해 498만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2001년 약정체결) 해 오고 있습니다.

○ 앞으로, 금년 4.20~4.21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생태환경 복원사업」에 대한 세부지원계획을 논의하고

- 황사발원과 이동, 예측, 영향평가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북아지역 황사 공동연구 협력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 중국대륙 등의 사막화가 지구온난화 등 전세계적인 기상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엔환경계획(UNEP), 지구환경기금(GEF), 유엔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ESCAP) 등 국제기구의 참여와 지원이 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황사피해 측정시스템 마련과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 황사 피해정도는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기가 어렵고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 광범위하므로 국가적 지원문제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연구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의 기능강화방안을 물으셨습니다.>

○ 지난 '99년 화성의 씨랜드, 인천 호프집과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통령께서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 시키는 일대 전기가 되도록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하셨고('99.11.2)

- 국무총리도 "월드컵에 대비,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심에 따라('00.5.24)
- 2000년 9월 부처·자치단체의 파견인력을 활용하여 Task-Force형태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이는 정부의 안전관리기능이 33개 법률에 의거 분산·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그동안 일각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통합·조정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만,
- 「작은정부 구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력증원없이 파견인력으로 「기획단」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 그동안 정부에서는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통해 각 부처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종합·조정 및 점검·평가와 지원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 화재·가스·전기안전, 시설물 안전 및 안전문화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종합대책」 100大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 특히, 매일 30여 명씩 사망하고 있는 교통사고(이는 매일 씨랜드 화재사고 같은 사고가 매일 1건씩 발생하는 숫자와 비슷함)를 감소시키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교통안전 중점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1%(2139명)나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 경제적 효과 : 1인당 3.4억 원×2139명=7300억 원

○ 그러나 「기획단」이라는 한시적인 조직의 성격상 파견인력으로만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미흡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따라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의 설치근거를 '대통령훈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켜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통안전정책위원회」, 「중앙안전대책위원회」 등 정책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정책조정 및 점검·평가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사특보 발령 시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및 항공기 운항이나 군의 경계태세 대책 등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황사경보 시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 또는 수업단축 등을 실시함에 따라, 학교에 따라 차이가 나는 등 해당 지역의 학부모·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4.10,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시 교육부에서 통일적인 행동지침을 마련·시행토록 하였

고, 교육부는 4.11 황사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 기상청의 황사특보 발령에 따라 지역상황에 맞게 시·도교육청별로 통일된 대응조치를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황사경보 발령 시 휴업조치가 결정되는 상황을 신속하게 각 언론이나 비상연락망을 통해 알림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황사 시 항공기 안전을 위해 지방공항에서 감항운행할 경우 인근 공항이나 육로연결 등 보완체계를 구축·대처하고 있으며, 군(軍)의 경계태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마약류 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 최근 마약류 압수량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등 주변 마약밀반출국에서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10배 이상 높은 우리나라에 판매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고

- 한편으로는 한국이 마약 생산·남용국가가 아니라는 국제적 평가를 이용하여 중국·일본·남미의 마약판매조직이 마약류의 중간경유지로 우리나라를 이용하고 있는 점이 주원인이며
- 또한 최근 일부 유학생 등 젊은층에서 마약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01.12 국무총리실 산하에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마약류 공급차단과 근본적인 수요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02.4.18 발표하였습니다.

- 마약류 근절 종합대책에서는 마약류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찰·경찰·관세청·식약청 등 마약수사·단속기관 간의 마약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주변국과의 국제공조 강화, 공·항만 감시체제 강화 등의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마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무엇인지를 밝혀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하여 처벌하는 국가는 얼마나 되는지와 대마흡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조약 제601호로 비준된 1961년의 '마약에관한단일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 동 협약을 비준한 국가(135개국)는 기본적으로 대마를 마약류에 포함시켜 자국 법률에서 대마의 사용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대마의 사용이 인체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는 연구가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보고된 주요한 부작용은 정신적인 의존가능성과 청각·시각장애, 기억상실, 의욕상실등 급성정신병, 간손상, 기형아 출산 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 정부는 대마에 대한 일부의 그릇된 인식과 폐해를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대마 흡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마약류의 증가가 마약류 사용을 청소년층까지 확대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정부도 최근 엑스터시, 야바 등과 같이 휴대가 간편하며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마약류의 유입 증가가 마약류를 청소년층으로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 우선 공·항만 검색과 청소년 유흥지역·업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류 판매사범 등에 대해서는 엄단토록 하여 신종 마약류의 공급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 언론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청소년들의 마약류 불법사용 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소년범 수용시설에서의 예방 및 재범방지 교육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함유물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물으셨습니다.

○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근절 종합대책을 통하여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2년 1회에서 연 1회 실시로 강화하고

- 의료용 마약류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 또한 환각성분 함유 의약품의 사용추이를 지

속적으로 관찰하여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신속하게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키로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의료계·약계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과도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몽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육성을 위하여 마약류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엄격하게 할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본드·부탄가스 등 유해화학물질 흡입사범의 80%이상이 청소년들이나 정부의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전개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실시한 결과

- '97년 이래 흡입사범이 연평균 29%씩 감소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환각물질 오·남용 폐해를 생각할 때 더욱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환각물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하는 한편
- 현재 환각물질 오·남용 청소년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고 치료·재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치료·재활의 근거를 만드는 등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사범이 범법자이면서 동시에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는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정부도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단순 격리 위주의 처벌로는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재범률 '01년 31.1%)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치료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방안을 「마약류근절 종합대책」에 포함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우선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단순투약자로서 자수 또는 개전의 정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보호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 마약투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마약중독자 치료내실화를 위해 국립부곡정신병원 마약중독치료소(200병상)를 마약중독자 치료전문병원으로 육성하고

- 교도소(구치소)내에도 마약전담치료실 개설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 현재 식약청과 복지부로 이원화되어있는 마약중독자 예방, 치료·재활업무를 법령 개정권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중독자 치료·재활업무를 효율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늘고 있는 것은 출입국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불법체류자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자국간의 수십배에 달하는 임금격차로 인하여 코리안 드림을 추구하는 동남아국가 국민이 밀입국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국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늘고 있으며, 또한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외국인 입국절차의 간소화가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2001년 위·변조여권소지자 등 입국거부 외국인 25,493명 2001년 강제퇴거·출국명령 등 출국조치 외국인 28,530명

○ 또한 국내 3D업종 제조업체의 저임금 외국인력 선호 및 185명에 불과한 출입국관리직의 부족한 전담 단속인력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으로는 법무부에서 우선 지난 3.25부터 5.25까지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장 2003.3.31까지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최대한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비자발급 및 입국심사를 강화하여 불법체류자 발생의 사전예방에 주력함과 동시에 또한 단속요원의 증원과 외국인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나감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 적정수준내로 불법체류자를 관리,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26만여 명의 불법체류자 중에서 밀입국자수 및 밀입국 근절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불법체류자중 밀입국자가 얼마나 되는 지는 밀입국의 성격상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함을 먼저 말씀드림. 다만, 2001년에 밀입국을 기도한 706명과 불법체류중 적발된 자 327명을 포함하여 총 1,033명을 적발한 바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중국인들입니다.

○ 밀입국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해안 및 항만에 대한 경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한·중 관계기관간 hot-line 개설을 추진하는 등 양국간 불법입국방지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해상밀입국 알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여 관련자를 엄중 처벌토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 밀입국자 신고포상금제도를 홍보하고 주민신고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의한 집단행동이 발생하고 있는 데 현재까지 발생한 외국인들의 집단행동 현황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지난 3월 12일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3.26 이후 서울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는 불법체류조선족에 대한 최소 5년 체류보장, 중국동포 자유왕래허용을 요구하며 7차례 항의집회를 열었으며 지난 4.12~16간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단식농성을 한 바 있으나 4.16 자진하여 농성을 풀었으며 민주노총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지부장: 이윤주)가 지난 4.7 중구 훈련원공원에서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설득과 홍보를 통해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불법옥외집회 및 가두진출에 대하여는 엄정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조기 자진해산을 유도하였습니다.

○ 향후 불법체류외국인의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입장입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불법체류자 신분 정상화조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불법체류외국인의 경우 구제하여 생활여건을 개선시켜주는 것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 일본의 특별체류허가는 1994년 최초로 인정된 사례로서 필리핀여성과 일본인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남편인 일본인이 사망한 후 부여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한 영주권의 부여도 10년이상 체류한 자 또는 3년이상 일본인과의 혼인생활을 한 자로서 두 경우 모두 범죄경력이 없고 가족부양능력이 있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 프랑스의 경우 취업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3년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기타 국가이익 또는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하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특별체류허가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없으나 임금체불, 소송계류, 질병치료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을 유예하거나 보호일시해제 등으로 권리구제를 한 후 출국조치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작년 한해동안 해결한 임금체불액은 27억8천만원을 초과

○ 향후 특별체류허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독도관련 왜곡기술을 한데 대해 독도의 우리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역사왜곡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 이번에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에 독도영유권 주장 기술이 포함된데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우리 입장을 엄중히 밝혔습니다.

○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시 35개항의 수정요구를 통해 문제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전달하여 놓은 바 있습니다.

○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기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한·일간 역사공동연구의 준비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 합의 이후 양국 정부는

구체적인 설립, 운영방안을 합의, 지난 3.5 이를 대외발표합니다.

- 역사공동연구위원회 및 이를 지원하는 「역사공동연구지원위원회」를 구성

○ 한·일 역사공동연구지원위원회가 4월 15일 동경에서 개최되어 양국 연구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을 협의합니다.

○ 한편, 「역사공동연구위원회」 1차 회의는 조만간 서울에서 개최키로 상기 지원위에서 일측과 합의합니다.

○ 앞으로 동 기구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감으로써 일본 교과서의 올바른 역사기술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사공동연구기구의 성과가 양국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역사교과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실현시킬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금번 합의한 한·일 역사공동연구는 문제가 되는 한·일관계사 부분을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연구자 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원위원회의 형태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진전된 형태입니다.

○ 연구성과의 교과서 반영문제에 대해 일 정부는 자국의 검정제도의 한계상 연구결과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나 연구결과를 연구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역사공동연구 성과가 공동연구위원회의 책임하에 정리되어 지원위원회에 제출되면 양국의 정부 및 관련기관, 국회의원, 대학을 포함한 연구기관 및 민간 등이 연구성과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널리 배포, 교과서 편수과정에서 참고로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이공계열의 학문진작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최근의 이공계 진학기피 현상은 학생들의 과학교과에 대한 흥미저하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경제적 처우가 다른 전문직업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등 사회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그 근본원인이 있는 것으로,

- 특히 우수한 자연계열 진학자들도 이공계보다는 의과대학 등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질적 측면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2일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하여 범 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현재 동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이 대책에는 초·중등 과학교육의 내실화 등 교육분야의 대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자의 직업여건개선과 사기진작 및 과학기술 친화적 사회풍토 조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며,

○ 특히 이공계열의 학문의 진작과 산업수요와 연계된 이공계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초학문의 집중적인 지원, 학제간공동연구의 활성화, 산업체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지원등의 다양한 정책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李性憲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정부출연연구기관 활성화대책비 활용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금년 예산에 반영된 184억원의 출연연구기관 활성화대책비는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 재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현재 연구회에서 동 예산의 집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오는 5월 연구회별 정기이사회에서 확정한 후 연구기관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연구회 이사장 선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① 원장을 통괄하는 이사장을 통괄대상인 원장들이 추천위원회에 추천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문제이고, 원장은 공개모집에 의해 뽑을 수 있도록 해놓고 이사장은 그렇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 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할 이사장후보를 연구원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사장은 연구원장을 지도·관리하게 되므로 다른 어떤 기관·단체보다 연구원장이 적임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한 것이나, 이사장후보 추천을 연구원장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원장 이외에 연구회 이사 및 산·학·연의 기관·단체에서도 이사장후보를 추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에서 이사장은 연구회별로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추천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구회 이사장 선임을 공모방식으로 하는 문제는 추천방식과 공모방식이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이사장 선출과 관련하여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사장 임명절차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원장은 공개절차를 거치게 해놓고 이사장은 사실상 비공개로 해 추천인 자격을 이해당사자로 제한하는 것은 전문성 및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정실로 임명될 수 있는 요식적인 구색만 갖추게 하는 절차는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 첫째, 원장 3인이 추천해야 이사장후보에 추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위 ①번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 둘째, 산·학·연으로부터의 추천을 국무총리가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실추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 총리실에서는 지난번 이사장 선임시 산·학·연이 추천한 인사를 모두 이사장추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 정부는 정실인사 등이 개입될 수 없도록 이사장 선출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셋째, 이사장추천위원회에 당연직이사의 경우 3급 이상 공무원의 대리참석을 허용한 것은 편법적 규정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정부부처 장·차관인 당연직이사의 경우 국정현안업무 수행상 부득이하게 이사장추천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순철 금감원 부원장보의 국민은행 감사선임과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총리훈령 408호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은행들은 후보추천위원회등 임원선임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금번 국민은행 감사선임의 경우에도
- 은행법등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3.4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국민은행의 감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이순철 금감원 부원장보를 후보로 추천하였으며 3.22일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아울러 사전에 본인의 수락의사가 있었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 진행과정에서 금감위원장과 이 부원장보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실제로 감사로 취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은행 감사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일각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趙在煥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최근 황사 내습이 급증함에 따른 우려를 하시면서 황사경보제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황사경보 발령이전에 예보를 선행적으로 실시, 대처해 나갈 체제구축과 대책기구의 일원화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 우리나라의 황사내습 일수는 80년대에 평균 3.9일이던 것이 90년대에는 7.7일, 작년에는 27일, 금년에는 4.18 현재 12일을 기록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22 관계차관회의를 개최, 정부 내에 「대책협의회」를 구성,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추진토록 하였습니다.
- 황사 예·경보를 위해서 기상청은 인공위성 사진분석 등을 통하여 황사 내습여부를 미리 발표하고 환경부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측정치를 기준으로 황사경보를 발령하는 체제를 4.6일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주의보 -300㎍/㎥이상, 경보 -500㎍/㎥이상, 중대경보 1,000㎍/㎥이상)

○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황사가 이미 내습하였을 때 황사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국민들이 황사에 대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됨에 따라
- 지난 4.10,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 황사예보 및 황사특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여, 1~2일 전에 황사예보를 발령하고, 황사농도를

분석하여 적어도 3~4시간 전에는 황사특보(정보, 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국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황사예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예산 확보 상황과 국민들에 대한 홍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현재 기상청의 황사 예보시스템은

- 일본 정지기상위성으로부터 매시간, 미국 극궤도 기상위상으로부터 1일 2~8회 관측자료를 수집하여 황사발생여부, 위치, 범위, 대략적인 강도를 분석하고
- 중국내 황사관측현황을 매3시간마다 수집·분석하여 황사 추적모델과 대기예측모델을 이용함과 아울러
- 우리나라의 안면도 등의 선도관측망 3개소의 측정치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예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나라 서해안의 선도관측망을 3개소*에서 16개소로 확충하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162개지역의 대기오염 측정기기를 기상청과 On-line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임

* 선도관측망 : 안면도, 관악산, 군산

- 또한 황사의 상층분포를 감지할 수 있는 「라이더(lidar)관측망」을 1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 라이더(lidar)관측망 : 안면도

- 중국과 협력하여 황사발원지역 3곳(고비, 황토고원, 내몽골) 및 중국 동쪽해안 2곳 등 총 5개소에 「국외 황사관측망」을 신설하여 중국과 공동으로 황사관측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필요예산은 「재해대책예비비」 등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 황사 내습 시 국민들의 행동요령을 만들어 TV 등 방송사에 홍보 방송을 협조의뢰하고(4.9), 전단지 5만부를 제작·배포(4.10)하였으며

- 4월중 국민홍보용 비디오를 각각 제작·방영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황사 내습 시 초등학교 등의 휴업·단축수업 등에 필요한 통일적인 행동메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황사경보 시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 또는 수업단축 등을 실시함에 따라, 학교에 따라 차이가 나는 등 해당 지역의 학부모·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4.10,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시 교육부에서 통일적인 행동지침을 마련·시행토록 하였고, 교육부는 4.11 황사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 기상청의 황사특보 발령에 따라 지역상황에 맞게 시·도교육청별로 통일된 대응조치를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황사경보 발령시 휴업조치가 결정되는 상황을 신속하게 각 언론이나 비상연락망을 통해 알림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사 문제는 한·중·일 간 공조가 필수적인 바, 3국과 공조하여 대책을 마련한 실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황사문제를 한·중·일 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장거리 이동물질 공동 조사사업('02~'06)을 실시 중이며
- 동북아지역의 사막화 방지 등을 위해 「중국 서부지역 생태환경 복원사업」에 대한 중국측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일정과 3국간 역할분담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지난 2000년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중국 서부 5개지역에 대한 조림사업('02~'05, 500만 불)과 내몽골의 방풍림 조성을 위해 498만 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2001년 약정체결) 해 오고 있습니다.

○ 앞으로 오는 4.20~4.21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생태환경 복원사업」에 대한 세부지원계획을 논의하고

- 황사발원과 이동, 예측, 영향평가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북아지역 황사 공동연구 협력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 중국대륙 등의 사막화가 지구온난화 등 전세계적인 기상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엔환경계획(UNEP), 지구환경기금(GEF), 유엔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ESCAP) 등 국제기구의 참여와 지원이 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황사발생 시 중국측이 정보제공에 소극적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외교적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그간 한·중 기상청간에 6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 황사의 관측·예보 등 연구결과를 상호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중국측은 황사관련 정보 협력을 위한 협정체결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임
  * 황사발생은 자연현상이므로 협정체결 등에 따른 비용부담문제 발생 및 중극측도 황사 피해국이라는 점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기상청에서 4월중 전문가를 중국에 보내 황사발생 농도, 강도, 이동경로, 지속시간 등에 대한 정보협조와
- 우리나라 기상전문가를 중국측에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관에게 당연직 이사직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내실있는 이사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당연직 이사들이 국정 현안업무 수행 등으로 인해 연구회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이사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각 연구회정관의 규정에 따라 차관이 위임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를 차관에서 차관보 또는 국장 등으로 격을 낮추는 것은 이사회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권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1) 새로운 복권이 계속 등장하면서 기본복권의 판매율이 2,30%에 그치자 노골적인 덤핑까지 성행하고 있고 발행량의 3분의2가량이 팔리지 않은 채 버려지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2) 현재 복권시장은 과당경쟁 상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로토복권의 발행을 둘러싸고 지난해 12월 27일 부처간 협의를 한 바 있는데 이때 부처간 의견대립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날 논의의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4) 이와 관련, 지난해 말 감사원에서 건교부와 문광부 등 부처를 대상으로 중복투자여부를 감사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5) 로토복권이 도입되면 건교부 등 7개부처는 가만히 앉아서 1년에 몇백억원에서 몇천억원의 배당수입을 올리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6) 각 부처는 복권이익금을 공익을 위해 쓴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익목적이라면 예산에 계상하면 되지 굳이 준조세적인 새로운 복권방식을 도입하여 국민의 호주머니를 축내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7) 로토복권은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의 복권시장 60%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된 복권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로토복권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8) 외국에 경우 로토복권을 발행할 시 주민의사를 묻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사업자 선정까지 했으면서도 공청회 한번 안 한 이유는 무엇인가?
9)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내에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복권시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하였다는데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 있는가?
10) 그동안 실무협의 과정에서 인쇄식복권에 대한 규제 필요성, 최고당첨금의 상향조정 등의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 로토복권 도입과 관련된 얘기는 없었는가?
11) 로토복권 도입 문제도 결국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가?
12) 복권시장의 확대가 전망되고 로토복권의 도입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복권사업 전반의 정비를 위해 통합복권법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현재 복권은 서민주택 건설, 국민체육 진흥, 근로자 복지 향상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10개 부처에서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되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권발행기관간 과당경쟁으로 복권이 남발되고 최고당첨금이 고액화되어 사회적 역기능이 부각되고 기금적립률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다만, 현재 각 부처로부터 통계를 집계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전체 복권발행액 대비 판매비율은 대략 50%를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작년 12.26일 당정협의 등을 통해 현재의 복권시장에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무조정실에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온라인복권(Lotto)를 포함한 복권관련 제반문제를 다루어 나가기로 논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여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현재 최고당첨금 수준과 구조, 판매수수료율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 마련, 온라인복권 발행체계 조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조속한 시일내에 제1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복권발행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복권의 사회적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조 위원께서 제시하신 통합복권법 제정 등 근본적인 제도정비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온라인복권은 전체 10개 발행기관 중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7개 기관이 12월 발매를 목표로 연합발행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온라인복권의 사행심 조장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월드컵 관련업체 지원 자금(1조 1000억 원)의 대출실적(4.6 현재 2908억 원)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월드컵 관련기업의 상품개발 및 판매와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개 시중은행이 1조 10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2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자금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은

- '97년 이후 작년 9월까지 5년 간 금융지원실적을 포함하면 월드컵 관련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4000억 원을 상회하여 상당한 기업은 이미 금융지원을 받았으며,
- 음식·숙박업체 및 휘장상품 관련 업체 등은 지원대상 조건(매출액 및 업력한도)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있으며,
- 제도시행 초기로서 관련기업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못한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에 따라 지난 3월 초 재정경제부에서 대상기업 확대, 지원조건 완화 및 적극적인 홍보추진 등「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금융지원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드컵열기가 부족하고 FIFA에 지급할 로열티로 인해 상품단가가 높아 기념품 판매가 부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당초 FIFA에 의해 월드컵공식상품화권 사업자로 선정된 CPP Korea는 국내사정을 잘 모르는 업체로서 고가의 로열티로 인해 판매가격이 다소 높고,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기념품 판매가 부진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금년 1월 말부터 국내기업인 KOLON TNS에서 동 사업을 인수·추진한 이후

- 로열티 수준이 많이 낮아지고 시장상황에 맞는 가격결정으로 판매가격이 평균 20% 정도 떨어지고,
-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앞으로 월드컵이 다가오고 내수경기가 진작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월드컵 기념품의 판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속터미널에 있는 기념품 판매소의 경우, 매장면적의 절반 이상이 휴대폰 판매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복궁에 있는 기념품 판매소는 몇 달째 문을 닫고 있는데, 기념품 판매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고속터미널 및 경복궁의 기념품판매소는 KOLON TNS와 기념품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하는 민간업소로서

- 고속터미널 판매소는 현재 휴대폰매장을 철수시키고 전매장을 기념품 판매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 경복궁 기념품판매소는 판매실적의 저조로 20

여일 전에 철수한 상태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상황 등은 사업권자인 KOLON TNS에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 월드컵조직위에서도 월드컵 홍보 및 붐 조성 차원에서 인천공항 등 국제공항과 민속촌 등 주요관광단지 내에 기념품 판매장 설치 협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월드컵공식상품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다양한 디자인 및 상품개발,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林鎭出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우리나라의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너무 한국팀 16강 진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마스코트 홍보 등을 통한 대회 전체에 대한 관심유발과 경제적 효과 제고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월드컵대회를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팀의 16강 진출이 국민적 관심사인 점은 사실이나 다른 나라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의 경우와 달리 16강 자체가 유일한 관심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월드컵을 온 국민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월드컵을 활용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월드컵대회를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현재 월드컵 관련 각종 이벤트행사 개최, 개최도시 주요거리 및 공항·항만, 버스·택시 등에 월드컵 홍보물 장식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대회 참여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고 있으며,
- 특히 월드컵 공식노래의 보급과 함께 국민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월드컵 국민가요를 제작·보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 아울러 월드컵 마스코트, 엠블렘, 휘장상품 등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정부 각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등이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대회의 마무리 준비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월드컵대회의 경제적 효과 제고와 월드컵대회를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가 신설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 발행방법, 최고당첨금 구조, 판매수수료율 등에 대한 조정이 있었는 지를 물으셨음. 또 앞으로 복권남발과 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복권의 사회적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복권은 서민주택 건설, 국민체육 진흥, 근로자 복지 향상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10개 부처에서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권발행기관간 과당경쟁으로 복권이 남발되고 최고당첨금이 고액화되어 사회적 역기능이 부각되고 기금적립률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같은 제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여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최고당첨금 수준과 구조, 판매수수료율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권발행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복권의 사회적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3.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1) 제주도내 영어공영화가 무산돼 외자유치에 차질이 예상되며, 외자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2) 금강산에도 내국인 면세점이 추진되는데 정부정책의 중복 추진 문제
   3)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동북아 타 자유도시와의 차별성을 살린 제주형의 국제자유도시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중

앙정부의 지원확대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령」이 2002. 4. 1일부터 시행되어 본격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영어공용화는 보다 충분한 검토를 위해 유보되었으나 외국인 투자가 등에 대한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어 교육 강화 및 각종 세제혜택 등을 통해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외자유치를 위해 현재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등 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을 만들 계획이며,

- 앞으로 특수법인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7대 선도프로젝트

휴양형 주거단지개발, 중문관광단지 확충, 서귀포 관광미항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제주공항자유무역 지정, 쇼핑아울렛 개발,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 금강산 내국인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과는 다른 남북경제공동체 구축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로 인해 제주도의 투자매력이 훼손된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각계의 전문가와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주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살린 제주형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황사와 관련한 대책마련과 황사경보제 등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황사경보제와 관련 교육부·교육청 등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여 혼란을 야기한데 따른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황사경보 시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 또는 수업단축 등을 실시함에 따라, 학교에 따라 차이가 나는 등 해당 지역의 학부모·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4.10,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시 교육부에서 통일적인 행동지침을 마련·시행토록 하였고, 교육부는 4.11 황사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 기상청의 황사특보 발령에 따라 지역상황에 맞게 시·도교육청별로 통일된 대응조치를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황사경보 발령 시 휴업조치가 결정되는 상황을 신속하게 각 언론이나 비상연락망을 통해 알림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사경보제는 시행의 기준치가 신뢰성·객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황사경보제」의 발령단계별 미세먼지농도 수치는 1시간당 평균농도가 2시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며

* 황사정보 : 300㎍/㎥이상, 주의보 : 500㎍/㎥이상, 경보 : 1,000㎍/㎥이상

- 이는 환경부에서 미국의 대기오염도 측정기준치를 참고하고, 시·도 관계관, 황사전문가, 기상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마련 하였습니다만,
- 앞으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연구작업을 통하여 황사의 정량예보 모델과 황사특보 모델 등을 개발하여 신뢰성·객관성을 확보한 기준치를 마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사대책과 관련한 한·중·일 3국 공동협력방안을 물으셨습니다.>

※ 33페이지 답변 내용 참조

<황사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황사에는 인체에 유해한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고 미세먼지 형태로서 호흡기관이나 폐기능이 약한 어린이·노약자 등에게 호흡기 질환이나 안질 등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 황사현상으로 인한 농작물의 직접적 피해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으나 농작물의 광합성 작용장애와 비닐하우스 투광률 저하로 생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 가축의 경우 호흡기 장애 및 안질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황사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적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피해를 계량화하기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국내정착 탈북자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①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 등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시며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② 탈북자 수의 증가와 정착지원비 증대 등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③ 국내 정착 탈북자의 국내생활 적응정도·범죄율에 대한 질의와 함께,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탈북 요인의 근본적 감소대책 △제3국 체류 탈북자 처리대책 △국내 입국 후 관리대책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제3국 체류 탈북자에 대해서는 "국내입국 희망자는 전원수용"한다는 방침아래 체류국과의 협조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중국 등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방안'에 대하여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나,
- 중국의 경우 탈북자를 경제적 사유로 입국한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처리는 중국의 주권사항으로서 제3국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 정착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의 입국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하나원'의 보호·수용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을 증축 중에 있으며,
- 관계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취업문제가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李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 앞으로 정부는 탈북자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취업보호제'를 강화해 나가는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 국내정착 탈북자의 국내생활에의 적응도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객관적인 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취업률이 '경제활동 가능자의 65%'로 낮게 파악되고 있는 바,
- 이는 우리 체제에의 부적응, 취업능력상 문제, 일반적인 취업여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앞으로 탈북자들이 보다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다만, 국내 정착 탈북자의 범죄율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특별히 별도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기류 불법유통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민간인 총기류 보유 실태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고 총기류 구입과정을 철저히 검토해 총기를 이용한 강력사건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정부는 총기류관련 사고로부터 우리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기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경찰에서는 공공의 안전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권총·엽총과 5.5mm 공기총 등은 경찰관서에 보관조치하고 있습니다.
  * 2002. 3. 31 현재 : 공기총 257,926정 경찰관서 보관조치
- 특히 월드컵기간(5.11~6.30) 중에는 5.0mm 등 모든 공기총도 경찰관서에 보관 조치할 계획에 있으며,
  * 2002. 3. 31 현재 보관대상 : 84,260정
- 총기소지허가자 중 범죄경력자·조직폭력배·정신 장애자 등 총기소지 부적격자를 정기적으로 적발,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 2002. 1월~3월 허가취소 698건

○ 사격장 및 총포 취급업소 등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 순찰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 3. 1부터 4. 30까지 개인소지총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총기류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불법총기류 특별단속 실적(2002.3.13~3.30)
    · 총 97건, 107명 단속(구속 6명, 불구속 38명, 과태료 63명)

유형별 단속 현황

구분	계	불 법 제조·판매	불 법 개·변조	불 법 양도·양수	밀반출 ·입	기타
건수	97	5	3	7	2	80
인원	107	7	6	11	2	81

○ 현재 총기를 소지하려면 경찰서장의 총기류 소지허가를 득 해야만 총포상에서 총기를 구입할 수 있으나 총기류 소지허가가 없으면 판매치 않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해 총기를 밀반입 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한번 있었던 만큼 총기류 불법개조와 밀거래 관련 첩보수집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총기류 구입과정에서부터 소지에 이르기까지 총기류 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총기류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근 수입품 암시장 등에서의 조직적인 총기류 밀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최근 금융기관에 대한 강력사건 등이 빈발한 것과 관련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① 금융기관 경비실태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② 자체경비에 소홀한 금융기관에 대해 엄격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③ 금융기관을 대상으로한 강력사건 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정부는 최근 금융회사에 대한 강력사건이 수차례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드린 것과 관련,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우선 금융감독원에 「방범실태 기동점검반」을 설치하고, 금융 회사 본점의 보안·안전 관련 부서 및 사고취약점포 300개를 대상으로 방범실태를 점검중에 있습니다.(5.15 점검완료예정)

○ 또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합동으로 금융회사 본점 및 사고취약점포를 대상으로 총 62개의 기관(점포)를 표본선정하여 자체 방위능력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금융회사 방범업무에 반영하는 등 방범실태 선진화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4.30까지 측정완료예정)

○ 이와 함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자체기동점검반」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자체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개선토록 독려함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관련예산을 증액하는 등 사고예방방지를 위한 자체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한편 방범실태 점검결과 및 사고실적을 금융회사 경영실태 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 방범체계가 미비하거나 관리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평가시 금융회사가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방범태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안전관련 특별정신교육을 150회 실시하고 상황별 모의훈련을 총 105회 실시하는 등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 언론매체를 통하여 경찰청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금융기관 보안·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을 홍보하여 범의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회사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붙 임)

「금융회사 보안·안전대책」 추진상황

□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금융회사 현금 피탈 및 영업점 침탈 사고 등의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가 보관하는 고객예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지난 2002. 3. 15.「금융회사 보안·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금융회사에 대하여 「동 대책」의 적극 이행을 독려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 은행장 등 금융권역별 경영진회의를 4차례 소집하여 보안·안전 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최고 경영진의 방범노력을 촉구하고 금융회사별 보안·안전체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자체 특성에 맞는 방범대책을 수립, 철저 이행 독려

2) 금융감독원에 「방범실태 기동 점검반」을 설치, 금융회사 본점 보안·안전 관련부서 및 사고취약점포 300개를 대상으로 방범실태 점검 중(5.15까지 점검완료 예정)

3)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합동으로 금융회사 본

점 및 사고취약점포를 대상으로 총 62개 기관(점포)를 표본 선정하여 자체 방위능력을 측정하고, 동 측정결과를 금융기관 방범업무에 반영하는 등 방범실태 선진화에 활용(4.30까지 측정완료 예정)

4) 금융회사의 「자체 기동 점검반」을 설치·운영토록 하여 그간 총 2785개 점포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개선

□ 이와 관련 각 금융회사는 보안·안전 관련부문 당초예산 3035억 원에 금번 117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그동안 CCTV가 일부 미설치된 점외 CD기나 점포 외곽, 지하주차장 등 보안·안전 취약지역에 총 2016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하고, 화질 및 보관상태가 불량한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CCTV 총 2004대를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 설치 중에 있으며,

□ 또한 오지나 소규모점포 등 경비업무 취약점포에 총 227명의 경비인력을 증원·배치하고, 365자동코너 등 무인점포에 무인기계경비 총 808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을 대부분 완비하였으며, 아울러 영업점에는 가스총, 전자충격기 및 전자가방 등 방범장비 총 5,815점을 추가 구입하여 비치하고, 거액 현송 시에는 최신 방범시설을 갖춘 현송전문회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동 대책이 정착될 때까지 「방범실태 기동점검반」을 계속 운영, 금융회사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감청을 허락한 법원의 영장발급건수에 비해 수사기관의 개인통신자료 요청건수가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법무부에 확인결과, 검찰은 그동안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왔으나, 최근 통신수단이 다양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자료에 대한 제공요청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번에 통신일시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제공받도록 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사생활을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3.30.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 앞으로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무부에서 일선 수사기관을 더욱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감청건수의 증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감청이 수사결과에 대한 기여도를 밝혀 불필요한 감청을 줄여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법무부에 확인결과, 그동안 검찰 등 수사기관은 범죄수사 및 범인검거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긴급감청을 포함한 모든 감청을 실시하여 왔으며

○ 이러한 감청의 결과

- 2001. 1.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에서 발생한 유아(7세) 영리약취유인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 등 살인사건이나 유괴사건 기타 강력사건의 범인을 다수 검거한 바 있으며
- 그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한 증거확보 등 범죄수사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제적 테러단체들의 국내활동이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는 이들 외국인의 범죄에 불가피하게 감청이 필요한 경우 외교적 문제와 전문인력확보 등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법무부에 확인결과, 외국인에 대하여 범인검거 등 필요에 의하여 감청을 실시하는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감청을 실시하도록 전담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수사기관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安大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안 위원님께서는 친북좌익인사 명단공개 추진본부 구성 움직임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들 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민간단체의 활동은 우리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실정법 질서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용됨이 원칙이며,
○ 다만, 이들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은 별개의 문제로서,
- 추후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사업의 타당성·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정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張泰玩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인천국제공항의 택시 호객행위, 부당요금 등을 걱정하시면서, 시설 좋은 국제공항을 만들어 놓고 국제적인 행사에 대한 준비가 입국장에서부터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 정부는 월드컵축구대회 기간 중 대부분의 참가자, 관광객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것으로 판단하고, 인천공항의 손님 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우선 전용심사대를 설치, 입국 심사·통관에 있어서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한편,
- 공항 내에 대형스크린 설치, 참가국 국기·환영문구, 종합안내센터 설치 등을 통해 외국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시의 부당 요금 방지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 지난해 7.16일부터 건교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 새벽, 심야 등 취약시간대에는 단속요원을 상주 배치하여 부당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5월 초에 약 51명의 인원으로 설립 예정되어 있는데 350억 예산 중 현재 73억만 확보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전담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당초 설립 준비 예산 및 면세점 등 일부 사업예산을 포함하여 350억 원을 금년도 예비비로 신청하였습니다.
○ 그런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면세점 등 수익 사업은 자체 재원 조달로 조정되었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내년도 예산이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앞으로 예산 확보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서)

○趙在煥 委員

(청소년보호위원회)

성 범죄자 신상공개관련 질의

○ 지난해 1차 신상공개 이후 공개자료의 조작, 복사, 전파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 신상공개 이후에도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여 신상공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 신상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은 몇 건이나 되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특히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지게 될 가능성은 없는가? 또한 받아들여질 경우 대응책은 무엇인가?

○ 지난번 2차 신상공개 이후에 국민들의 다양한 불만들이 쏟아집니다. 특히 공개범위와 관련하여 정확한 주소지와 사진 공개 등 더욱더 강력하게 대처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에 대한 청보위 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 청소년을 성매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어른들이 가장 큰 문제지만 상습적으로 성매수를 일삼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됩니다.
- 상습적으로 성매수 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는데 청보위 측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 성범죄자의 범죄를 죄질별로 나누어서 질이 나쁜 범죄(가령 취학 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하는)는 더욱 강력하게 죄질이 약한 범죄에는 약한 처벌을 주는 식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등급을 매겨서 신상공개 기간이나 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후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들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흡연 청소년 대상 전국 일제 선도계획관련 질의

○청소년흡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로 파악하는가? 지난 4월1일부터 2달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벌인다는데 청소년에게 담배를 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왜주류 및 유해업소 일제단속과 함께 실시하면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는데 왜 같이 실시를 하지 않았는지?

- 그동안 실시된 단속건수를 보면 98년 3821건, 99년 2923건, 00년 1602건, 01년 1772건입니다.
- 2000년과 2001년엔 98년 99년에 비해 단속건수가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이렇게 저조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선도계획은 전국일제선도(4월 1일 16:00~19:00, 5월 2일 16:00~19:00)가 2회 자율선도가 8회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해 놓고 하는 단속은 그야말로 전시행정 아닌가?

- 이번 단속에서 청보위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중심으로 연인원 1400여명 참가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인가?
- 연인원 1400명이면 10번 단속 시 한 회에 140명 꼴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참여가 거의 미미한 것 아닌가?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초·중·고등학교의 교사·학부모, 시민단체(청소년단체 포함), 임·직원 회원 등이 감시단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평소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또 청보위에서는 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현재 유해환경감시단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유명무실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감시단 인원과 지원을 늘려 제대로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李訓平 委員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공개 후 파급효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청소년 성폭력 방지 및 예방차원에서 2001년 8월 30일 성폭력 범죄자 169명에 대하여 1차로 발표되었고 2002년 3월 19일에 443명에 대한 2차 신상공개가 이루어졌으며 2002년 4월 10일 현재 1250건이 접수되어 심층분석 후 9월경에 3차 신상공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후 당사자와 가족들이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가정이 파탄되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가족 중에도 청소년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 또한 생계유지 차원에서 또 다른 범죄자가 양산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후유증 또한 심히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명단 공개 후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향후 조사계획은 있는지 등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장의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두 달간 청소년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붙잡은 성매매 청소년 539명 중 39.9%인 215명이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으며 이중 10명은 초등학교 학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령별로는 15~16세가 238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17~18세가 234명(43.4%), 13~16세가 59명(10.9%), 12세 이하 8명(1.5%) 등 이었으며 16세 이하의 청소년이 전체의 56.5%로 나타났으며, 성매매 청소년들의 성매매 이용수단은 사이버 채팅이 64.1%를 차지하였고 전화방 7.3%, 대면 7.1%, 휴대전화 3.5% 등으로서 대부분 PC 방이 범죄이용수단인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청소년들의 PC방 출입 통제 대책과 업주들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계몽선도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선도 대책은 무엇이며 재범율은 어느 정도 증가되었는지 등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장의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張泰玩 委員

청소년 성(性)범죄자 처벌관련

○지난 2월에 김성이 전위원장의 후임으로 행정능력과 조직 관리능력 및 추진력을 두루 갖춘 이승희 위원장께서 3대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질 의)

이승희 신임 위원장께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민간단체와 함께, 청소년이 앞장서면서, 지자체와

기업이 손잡고,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보호를 범국민적 차원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신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장께서는 새정치국민회의 여성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실 때 그 당시 청소년성매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신상공개제도가 포함된「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증가 추세는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각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와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더욱 지능화되고, 흉폭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법무부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현행 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 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시민단체의 반대와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현재 유보상태임)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검찰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입장 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은 우리사회가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청소년 보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청소년의 처벌을 배제할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매매 청소년들을 형사처벌하기에 앞서 치료와 선도가 우선된다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수용해 선도하고 교육을 시켜 재범을 막고 사회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귀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질 의)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회복귀시스템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青少年保護委員長 李承熙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첫번째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후 당사자의 가정이 파탄되는 등 그 후유증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검찰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입장차이」

구분	입 장
검찰 및 법무부	- 청소년 성보호법이 사실상의 윤락행위를 한 청소년을 형사처벌 하는 대신 보호처분토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매매 청소년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 특히 성을 팔아도 처벌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귀가 등 보호조치만으로는 효율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 청소년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청소년 보호 위원회	- 청소년의 성매매가 사회 구조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이를 외면하고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처벌해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다시 범죄와 비행의 나락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매춘 미성년자를 형사법원에 기소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구속된다 하더라도 1~2개월 후면 대부분 석방되기 때문에 선도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주장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범죄를 행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신상공개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 후단에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고

○신상공개시 공개대상자의 가족과 관련한 사항은 전혀 표출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범위에서 사진을 제외하고, 주소를 시·군·구까지 공개하는 등 공개대상자와 가족을 고려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명단 공개 후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하였는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향후 조사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공개내용과 방법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개진되어 왔습니다.

○국정홍보처의 2001. 10월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 신상공개범위를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3.4%인데 비해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3.6%에 불과했으며,
- 공개매체 및 장소도 확대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4.7%, 더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1%였습니다.

○금년 중에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신상공개제도가 재범방지와 국민의식·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한 효과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성범죄자 관리와 지역사회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선도대책은 무엇이며 재범률은 어느 정도 증가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성매수 대상 청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사회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매수 대상 청소년 선도는 1차적으로는 가정과 학교가 담당해야 하겠지만, 가정·학교에 의한 선도가 불가능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선도·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일부 종교·시민단체에 의해 개별적으로 성매수 대상 청소년 보호·선도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미흡한 수준으로

- 우선 이런 활동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당국과 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장기적으로는 성매수 대상 청소년 보호·선도기능수행 시설·프로그램·지도자 등의 확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청소년이 재차 적발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해서는 현재 공식적인 조사통계자료가 없어 답변 드리지 못함을 이해 바라오며 이후라도 통계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하겠습니다.

네번째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시고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실적, 예방 및 근절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년 폭력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고 자살 등 고질적인 사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년도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폭력 실태조사”와 같은 정책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폭력예방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금년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교육, 캠페인 전개 등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면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의 사전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사용, 학생용, 학부모용 예방교육교재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며 아울러 민간단체의 폭력예방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이들과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폭력피해 학생들이 하루빨리 정상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사회봉사 등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張泰玩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민간단체와 함께, 청소년이 앞장서면서, 지자체와 기업이 손잡고,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보호를 범국민적 차원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신임 위원장으로서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보호업무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민단체는 물론 기업도 함께 참가하여 우리사회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일탈과 비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부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지역사회나 기업이 재원을 부담하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는데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및 물질만능주의로 피폐해진 가족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함께 가족회복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청소년문제의 원천적 시발점인 가정을 회복시켜 가출 등 청소년 탈선 및 비행을 예방,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경우 획일적으로 처벌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맡기자는 주장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성매수 대상 청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규상으로도 검찰·법원이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선도조치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 법률의 입법취지가 비록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각은 성매매를 한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 배제가 일종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빚고 있고, 청소년들이 성매매가 범죄가 아닌 것으로 오인할 소지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간접적으로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 중형위주의 형사정책이 범죄예방에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의적 시각이 강하고, 형사처벌이 설령 범죄예방의 효과를 갖더라도 성인에 비해 개선가능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이 큰 청소년에 대해서 전과의 낙인을 찍어 개과천선의 기회마저 가로막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 또한 상습·악의적 성매수 대상 청소년은 소년부로 송치하여 최대 2년간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경우 완전히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성매수 대상 청소년 사회복귀시스템의 현황과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사회복귀시스템은 아래와 같으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성매수 대상 청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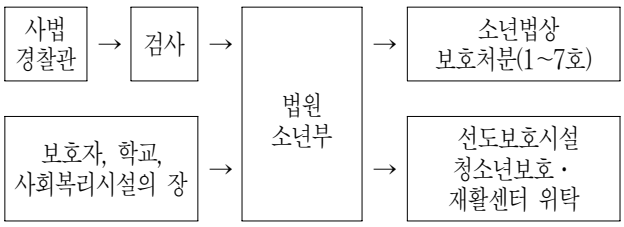

○성매수 대상 청소년 선도는 1차적으로는 가정과 학교가 담당해야 하겠지만, 가정·학교에 의한 선도가 불가능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국가·사회의 선도·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일부 종교·시민단체에 의해 개별적으로 성매수 대상 청소년 보호·선도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므로 우선 이런 활동수행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성매수 대상 청소년 보호·선도기능수행 시설·프로그램·지도자 등의 확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립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趙在煥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첫번째로 흡연 청소년대상 전국 일제 선도계획과 관련 주류 및 유해업소 일제단속과 함께 실시하여야 하며, 일제선도 2회, 자율선도

8회 등을 사전에 정해놓고 실시하는 단속은 전시행정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연인원 1,400명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와 10회 단속이므로 1회에 140명인데 이는 전국적으로 보면 참여가 미미한 것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 청소년 흡연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흡연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특별히 이번에는 흡연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선도계획을 경찰청과 공동으로 수립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며, 또한 선도계획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동시 일제 선도와 지역실정을 감안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던 것입니다.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원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선도 활동전개 시 지역별 분산 투입(서울 200명, 제주 40명, 기타지역은 80명씩)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 규모로 볼 때 미미한 것은 사실이나 부득이 예산문제 등을 고려 결정하였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위원님의 지적을 고려하여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및 지원내용을 질의하시면서, 감시단 인원 및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2002. 3월 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시민단체 268개, 학교 733개 등 1001개 단체 및 학교가 지정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 신고·고발, 유해업소 업주계도 및 청소년보호법 홍보 등 다양한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는 전국의 감시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총32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체에 약 2억1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추후 2차 공모 및 지원을 통하여 민간 감시단체의 감시정화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 또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원으로서의 역할과 자세, 활동방향 등에 대한 각종 워크샵 등의 교육(금년 8회 예정)을 통해 감시단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 감시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실천모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유해환경 교육프로그램인 'YP(Youth Patrol) 운동'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각급 학교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 향후 지속적으로 감시단원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감시단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난해 1차 신상공개 이후 공개자료의 조작, 복사, 전파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 제1차 신상공개시 접속자의 과다로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부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신상공개자료가 유포되어 공개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여론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인터넷의 속성상 자료의 복사·전파를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였는바,

- 제2차 신상공개시부터는 Flash를 이용하여 신상공개명단을 작성하고 Java scripts로 문서를 편집하여 복사를 방지토록 하고, 포털사이트 운영 7개 업체에 대해 무단 게재를 제재하도록 요청하였으며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시 무단 복사·전파 행위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공지하여 유포를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일부에서 자사의 홈페이지 홍보를 목적으로 명단을 악용하거나 문서를 변조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나,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신상공개 이후에도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여 신상공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보완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및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우리 사회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근절을 위해서는 현 방식의 신상공개제도 운영만으로는 부족하고, 예방, 단속·처벌 및 사후 재활·치료·사회복귀지원 등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중에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시책을 전개하고,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치료·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로 신상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은 몇 건이나 되며, 현재 진행상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 신상공개에 대하여 이의제기한 내역은 행정심판 7건, 행정소송 3건입니다. 구체적 진행경과는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여섯번째로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지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또한 받아들여질 경우의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급속한 확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한 것으로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특수성과 사회적 상황 등을 감안한 입법정책이라 생각합니다.

○ 만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될 경우 동 법 제도의 합헌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토록 하겠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어떠한 논거에 의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는 현재상황에서는 불명확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내용에

[별 첨]

행정심판·소송 진행경과

○ 총 괄

(2002. 4. 10현재)

구 분	계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비 고
	계	종 결	진 행	계	종 결	진 행	계	종 결	진 행	
제1차 공개	2	1	1	1	1		1		1	
제2차 공개	8	5	3	6	5	1	2	1	1	
계	10	6	4	7	6	1	3	1	2	

○ 제1차 신상공개

- 행정심판 : 1건

청 구 인 (생년월일)	접수일자	사 건 요 지	진 행 경 과	비 고
류○○ (70. 1. 20)	01. 5. 28	- 17세(여)와 성매수 총4회 - 벌금500만원	- 01. 6. 2 답변서제출 - 01. 7. 26 기각처리	종 결

- 행정소송 : 1건

원 고 (생년월일)	제기(접수)일자	사 건 요 지	진 행 경 과	비 고
두○○ (63. 4. 29)	01. 7. 16 (01. 7. 23)	- 13세(여) 성매수1회 - 벌금500만원	- 01.8.6답변서제출 - 01.7.20집행정지 - 01.9.7준비절차기일소환 - 01.12.7증빙서류제출 - 02.1.3 소송대리인 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 - 02.1.16간담회개최	- 진행중

○ 제2차 신상공개

- 행정심판 : 6건

청 구 인			접수일자	사 건 요 지	진 행 경 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직업				
이○○	62.12.15	무 직	01.12. 3	- 6세(여)강제추행 - 벌금300만원	- 01.12.13 답변서 제출 - 02. 1.14 기각처리	종결
조○○	72.10.27	가스 배달원	01.12.15	- 18세(여)청소년 윤간 -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 01.12.15 답변서 제출 - 02. 1.14 기각처리	종결
김○○	69. 9. 5	회사원	02. 1. 4	- 15세(여)와1:2성관계 - 벌금300만원	- 02. 1.14 답변서 제출 - 02. 3.15 기각	종결
최○○	72. 5.27	건축기사	02. 1. 9	- 15세(여)와1:2성관계 - 벌금300만원	- 02. 1.17 답변서 제출 - 02. 3.25 기각	종결
최○○	54. 4.24	종업원 (현대부품 대리점)	02. 1.17	- 15세(여) 성매수 3회 - 벌금300만원	- 02. 1.23 답변서제출 - 02. 3.11 집행정지결정 - 02. 3.25 인용결정	종결
최 ○	73.11.14	컴퓨터프로 그램제작	02. 2.14.	- 14・15세(여)와 1:2 성관계 - 벌금1,000만원	- 02. 2.19 답변서제출	진행중

- 행정소송 : 2건

원 고			제기(접수) 일자	사건요지	진행경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직업				
조○○	72.10.27	가스 배달원	01.11.28 (01.12.3)	- 18세(여) 청소년 윤간 - 징역3년, 집행유예4년	- 01.12.17 답변서제출 - 02. 1.29 제1차 소환 (원고불참) - 02. 2.19 제2차 소환 (원고불참) - 02. 3.20 소취하간주처리	종료
천○○	72. 3. 8	회사원 (진주고려병원 건강증진실)	02. 2.16 (02. 2.22) 02. 2.23 (02. 2.28)	- 18세(여) 강제추행 - 집행정지 신청	- 02. 3. 7 답변서제출 - 02. 3. 4 답변서 제출 및 심문기일소환 참석 - 02. 3. 16 사전심리기일예정	진행중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제2차 신상공개 이후 공개대상자의 정확한 주소지와 사진 공개 등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후 공개대상자의 주소, 사진, 직업 등 공개내용과 방법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개진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년 중에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상공개제도가 재범방지와 국민의식・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한 효과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성범죄자 관리와 지역사회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상습적으로 성매수를 일삼는 청소년들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성매수 대상 청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청소년들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매매행위에 대한 어른과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비록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왜곡된 성문화가 만연하면서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의 경우도 그릇된 성의식에 편도되어 탈선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러한 상습·악의적 성매매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년 건전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앞으로도 건전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홍보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연고, 귀가거부 성매수 대상 청소년 사회복귀지원을 위해 보호·선도 기능수행 시설·프로그램·지도자 등의 확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성범죄자의 범죄를 죄질별로 나누어 등급을 매겨서 신상공개 기간이나 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후 공개내용과 방법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개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신상공개제도가 재범방지와 국민의식·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한 효과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범죄자 관리와 지역사회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후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신상공개제도의 형태로는 공개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일괄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에서 성범죄자 사후관리를 통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재범방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서)

○李訓平 委員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문제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는 공정위 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하여 연내에 사법경찰관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행태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정위가 수사권을 갖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삼성카드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고 삼성그룹이 부당내부거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폐기, 조작하는 행위를 하는 등 재벌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공정위가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부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1. 공정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와 관련, 공정위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이 경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법경찰관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실효성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는 등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2. 공정위 직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재계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공정위가 형사사건에 사용할 강제수사권을 확보해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경련은 '부당내부거래는 선진국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자율로 해결하도록 맡기거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에 한정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계의 주장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라며, 향후 수사권 부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압력에 밀려 공정위의 방안이 완화되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싸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이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우표제'를 둘러싸고 '다음'과 인터넷 업체 간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상에서의 최대 공해인 스팸메일을 방지한다는 목적아래 한메일 회원에게 하루 1000통 이상의 대량의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기업이나 단체로 하여금 1통당 10원씩의 우편료를 부담시키는 '온라인우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 인터넷기업체들은 '이메일자유모임'을 만들어 다음의 '온라인우표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자유모임' 측은 '온라인우표제'의 시행에 대해 '다음'이 국내 이메일 서비스의 70%를 장악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인터넷 기업들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온라인우표제'에 대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상대방을 불공정거래와 부당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맞제소한 상황입니다.

1. '다음'과 '이메일자유모임' 간의 이러한 '이전투구'는 결과적으로 애꿎은 네티즌들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우표제'에 반대하는 인터넷 업체들이 한메일 계정을 쓰고 있는 네티즌들에게 이메일주소를 변경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네티즌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만약 이메일 계정을 바꾸지 않으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이메일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우표제'를 둘러싼 공방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네티즌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최근 인터넷서점의 가격 할인을 두고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간에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이 소비자에게 이익을 준다는 명분 아래 책값을 최고 30%까지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프라인 서점들은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문화관광부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인터넷 서점의 가격 문제에 대해 온라인 서점의 책값 할인을 10%로 제한하는 '출판및인쇄진흥법안'을 만들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서점들 간의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저해하여 좀 더 싼 값에 책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출자총액제한 관련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산규모가 5조 이상인 19개 기업집단을 2002년도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받는 '동종출자기업'이 애초 출자회사는 매출액의 25% 이상인 업종만 해당되었으나, 매출액의 25%를 넘는 업종이 1개뿐인 경우에는 매출액이 2위이면서 15% 이상인 업종도 포함되게 개정안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또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 대상인 '밀접한 관련사업'의 경우에도 입법예고안에는 없던 '관련시장에서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고 다른 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설비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라는 자의적인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1.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의 공정거래법 개정에 이어 공정위가 또 다시 예외조항을 확대함으로써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실효성도 없이 규제비용만 유발하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재벌개혁 정책이 갈수록 후퇴하여 공정위가 결국은 재벌개혁에서 완전히 손을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2.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과정을 보면 주무부서인 공정위가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재벌의 노골적인 개혁후퇴 요구와 재경부의 압력에 굴복한 흔적이 역력한데,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가 그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답변 바랍니다.

국제카르텔에 대한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흑연전극봉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며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려 국내전기로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미국, 일본, 독일의 6개 기업에 대해 지난 3월 공정위는 모두 112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당국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통해 국제카르텔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8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국내기업들이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지역에서 해당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쟁당국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본격제재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나 제재를 받은 해당업체들은 현재 공정위의 조치에 반발하며 과징금 납부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에 앞서 공정위는 해당국과 사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국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밝혀 주고, 해당 업체들이 과징금 납부를 거부하는 등 계속 반발할 경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 현재 국제시장을 보면 의약, 화학약품을 비롯해 각종 원광, 농산물 등에 대한 카르텔조직이 광범위하게 구성돼 있어 이들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산업의 피해가 작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들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해 어떤 조사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경쟁법을 역외적용 하는 데 있어서 해당국이나 업체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큰 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효과적인 조사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밝혀 주기 바랍니다.
3. 국내기업인 미국, EU,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받은 벌금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기업이 잘못한 사항도 있을 것이나, 해당국의 경쟁법과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국내기업이 억울하게 피해를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쟁법의 역외적용 못지 않게 경쟁정책의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외국 경쟁당국에 의한 국내기업의 제재를 최소화하고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朴柱宣 委員

경쟁정책의 실효성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경제분야의 규제개혁과 불공정거래를 차단하여 시장에 경쟁원리를 확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자난해 공정위는 의료, 건설, 신문·방송 등 6개 분야에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한 결과 큰 성과를 자신한 바 있습니다.

(질 의)

그러나 최근 의약분야의 담합행위가 적발되고 건설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각 분야의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이들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께서는 이들 시장에 대한 사후점검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이며 어떠한 보완대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 의)

공정위는 올해의 주요업무계획에서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경쟁정책을 수립하여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맞춤형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은 무엇이며 현재 진행 중인 정책과 향후 계획 중인 구체적인 시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질 의)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서 공정위의 심결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2심법원인 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법부는 공정위의 심결에 대한 불복소송을 1심법원인 행정법원에 제소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심급이 현행 2심에서 3심제로 늘어날 경우 발생될 문제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질 의)

현재 경쟁당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시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재판관할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들 선진국의 제도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질 의)

만약 사법부의 검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소송의 재판관할이 현행 2심법원에서 1심법원인 행정법원으로 변경될 경우,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공정위의 위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진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결합을 통한 독과점 형성 방지대책 마련

- 기업결합은 독립된 기업들이 인적·물적, 그리고 자본적 결합을 통하여 동일한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결합은 대개 해당기업의 생산 및 판매 등에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행하여집니다.

  하지만 기업결합은 시장에서의 경쟁자 수를 감소시켜 해당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독점적 가격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 후생의 감소시키며 독점적 이윤창출로 인해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에 소홀하게 하여 사회적 비효율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질 의)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의 분석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동안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를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승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 의)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시장의 획정이나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정위가 새로운 경제환경에 부합하는 시장획정의 기준과 경쟁제한성 판단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정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 의)

최근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있어서 현행 사후신고의 원칙을 사전신고제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전신고제도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출시킬 우려가 있고 전체적으로 기업결합을 위축시켜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의 견해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대기업정책 관련

- 공정위는 기업구조조정을 돕고 재벌들이 주력업종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한해 왔던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 중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가 20여개에 달하고 있고 현재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집단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부채비율 100%와 자회사에 대해 자본금의 50%이상 출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일단 대규모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바뀔 경우에 채무보증 및 출자총액제한 등의 규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질 의)

따라서 이러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 출자비율이 특히 높은 일부 재벌들이 최근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해 왔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의 설비 및 전환을 제한해왔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제 지주회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선회한 배경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 의)

최근 공정위는 채무보증대상 기업집단을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등 채무보증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해외금융기관을 통한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아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동반부실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 의)

공정위는 상호출자에 대해서도 규제대상을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확대함으로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열기업간 직접적인 상호출자만을 규제할 뿐 기업집단간 교차 상호출자나 역외펀드를 통한 우회적인 상호출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이러한 우회적인 상호출자를 통해 가공자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시각은 어떤 것이며,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동정업종에 대한 출자의 경우에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이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동종업종 출자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자회사 및 피출자회사의 영위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동종업종의 판단시 출자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25%를 넘는 업종을 그 회사의 업종으로 인정하되. 해당업종이 1개인 경우에는 2위이면서 매출액의 15%이상인 업종도 포함하며, 피출자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25%이상이면서 최고 매출비중인 업종만을 그 회사의 업종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 의)

공정위가 동종업종기업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제외한 배경은 무엇이며 이 규정의 적용기준을 위와 같이 정한 경위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 의)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이 제외되는 밀접한 관련사업에 대한 출자의 경우에도 공정위는 그 기준을 출자회사와 피출자회사간 판매, 유지·관리·보수, 원재료·부품공급 등에 있어 50%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거나 관련시장에서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고 다른 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설비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출자총액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와 이러한 기준이 설정된 배경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 의)

현행 공정거래법은 한도초과 출자분의 해소시한 초과시에 의결권행사를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로부터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는 금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결권 행사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에 관한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고 의결권행사 금지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제도로써 다수의 기업들에 대한 대상주식의 의결권행사 금지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라며, 보완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관련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시장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일본, 미국 및 독일 국적의 6개 흑연전극봉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2억4200만 원(853만2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전세계 흑연전극봉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 6개 업체는 '92. 5월부터 '98. 2월까지 런던, 도쿄 등에서 수 차례 모임을 갖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및 시장분할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한 결과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외국에 소재한 외국사업자의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해 우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첫 사례로, 외국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로 인해 우리기업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우리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 사실 그동안 미국이나 EU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국제카르텔행위의 혐의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각종 제재와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한 것은 외

국기업들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에 대해서도 상징적인 조치로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 의)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이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조치가 집행력에 있어서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공정위의 조치를 실효성 있게 집행할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질 의)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위한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는 어느 나라이며 그 진척상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협의추진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시장개선대책 관련

-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카드수수료 담합 문제, 전업카드사와 은행들 간의 단말기 사용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사와 관련된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질 의)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소임을 가진 공정위의 입장에서 볼 때 신용카드와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업종이나 매장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 의)

최근 일부 중간상인들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쌀을 구매하게 하는 형태의 소위 카드깡을 통하여 폭리를 취하고, 이렇게 구입한 쌀을 저가에 대량으로 매도하여 미곡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조사 관련

- 우리나라의 벤처기업들은 국가경제가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성장엔진이며 청년들의 꿈과 우리산업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일부 잘못된 벤처기업인들이 우리산업의 미래를 개척할 기술개발보다는 금융시장을 통한 손쉬운 돈벌이에 매달리면서 벤처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질 의)

경제관련 장관으로서 벤처기업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합리적이며 타당한 정부의 벤처기업정책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질 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100여개 벤처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벤처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과 조사대상 기업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安大崙 委員

과징금 부과 소송, 패소

- 지난달 공정위가 담합으로 가격을 인상시킨 동서식품과 한국 네슬레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법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 재판부는 “싸면 잘 팔리지 않는 국내 커피시장의 독특한 상황에서 서로 경쟁이 표출된 것뿐”이라고 했는데 결국 기업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제품을 고급품이라고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번 공정위의 패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제품의 고급화를 빌미로 가격을 상승시킬 경우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것인지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지

- 우리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재경부가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이던 사채 이자상한선 90%는 너무 높다고 하시면서, 이보다 낮은 선에서 상한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 이는 공정위의 방침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정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적정 상한선은 몇 %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재경부의 안이나

공정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또다시 마지못해 재경부 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힘의 논리에 따라 수수료율도 변동

- 얼마 전 롯데백화점과 삼성카드 간의 가맹점 수수료 분쟁이 힘겨루기 결과 수수료가 다소 인하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 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카드 가맹점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카드회사들이 힘 센 가맹점한테는 낮게 해 주고, 힘없는 가맹점에겐 높게 부과한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카드사들이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입김에 따라 임의대로 정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한 예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보험사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평균 3.24%에 달해 백화점업계의 평균 2.5%보다 훨씬 높아 손해보험협회 역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모호한 기준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가 금감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수수료율 선정 기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鎭出 委員

직접규제에서 금융 등 관련제도 보완을 통한 간접규제로 전환해야!

□ 현황 및 문제점

○공정위는 2002년 4월 2일 대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19개 기업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43개 기업을 각각 지정합니다.

○이는 기존의 '자산순위'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위주의 재벌정책에서 명백한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및 '정책의 예측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조치를 통해 제도적 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 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 기업 지배구조의 낙후성을 들어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질의 1)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유지 주장에 대한 논거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은 상당히 진전됐지만 대기업의 지배구조나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개선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취해 왔는데,

-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30대그룹의 기업결합 건수는 168건으로 전년보다 29.1% 감소했고,
  - 전체 기업결합에서 30대그룹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33.7%에서 26.1%로 낮아졌으며,
  - 특히 업종전문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30대그룹의 기업분할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작년 고합과 동국산업이 부실사업정리를 위해 코오롱상사와 한화 등은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을 분할합니다. 올해에도 LG화학과 LG전자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분할을 추진중입니다.
- 이처럼 30대그룹의 기업결합이 줄고 기업분할이 늘고 있는 것은 30대그룹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축소되는 가운데 사업구조 재편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질의 2)

또한 이번 개정안처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출자총액제한기업 지정으로 당장은 그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향후 기업의 자산이 더 늘어나면 규제대상 대기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도 현재는 47개 그룹이지만 2~3년이 지나면 6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 이처럼 규제 받는 대상이 크게 늘어나 규제완화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규제를 그대로 두면서 예외조항만 늘리는 것은 이번 법 개정이 의도하는 투자촉진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 따라서 현재 공정위가 주장하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금융 등의 관련제도의 보완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채무보증과 상호출자 등의 직접 규제 확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표> 2002년 출자총액·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단위 : 조원, 개)

순위	기 업 집 단 명	자산총액	계열사수	내 용
1	한국전력	90.9	14	출자총액·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신규)
2	삼성	72.4	63	〃
3	LG	54.5	51	〃
4	SK	46.8	62	〃
5	현대자동차	41.3	25	〃
6	KT	32.6	9	〃 (신규)
7	도로공사	26.4	4	〃 (신규)
8	한진	21.6	21	〃
9	포스코	20.8	15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10	롯데	18.0	32	〃
11	토지공사	14.9	2	출자총액·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신규)
12	주택공사	14.5	2	〃 (신규)
13	현대	11.8	12	〃
14	금호	10.6	15	〃
15	현대중공업	10.3	5	〃 (신규)
16	한화	9.9	26	〃
17	수자원공사	9.5	2	〃 (신규)
18	가스공사	9.1	2	〃 (신규)
19	두산	9.0	18	〃
20	동부	6.1	21	〃
21	현대정유	5.9	2	〃
22	효성	4.9	15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23	대림	4.9	15	〃
24	코오롱	4.9	29	〃
25	제일제당	4.3	28	〃
26	동국제강	4.3	6	〃
27	하나로통신	4.2	8	〃
28	한솔	4.2	12	〃
29	농업기반공사	4.1	2	〃 (신규)
30	담배인삼공사	4.0	2	〃 (신규)
31	신세계	3.9	10	〃
32	동양	3.8	16	〃
33	현대백화점	3.3	10	〃
34	현대산업개발	3.0	10	〃
35	영풍	2.8	24	〃
36	대상	2.4	12	〃 (신규)
37	동원	2.3	17	〃 (신규)
38	태광산업	2.3	18	〃
39	KCC	2.3	6	〃 (신규)
40	동양화학	2.3	19	〃
41	대성	2.1	32	〃 (신규)
42	한국타이어	2.1	6	〃 (신규)
43	부영	2.1	4	〃 (신규)

※ 2002년 4월 1일 기준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들어 할인회원권 소비자피해 급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 5쪽을 보면) 공정거래위는 회원제사업분야 중 특히 휴양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및 할인회원권업 등 4개 분야에 대해 5월말까지 전면 실태 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최근 들어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 할인회원권 업체 수는 2000년 약 90개였으나 2002년 현재 약 130개로 44.4% 증가합니다.
- 2001년에 할인회원권 관련 상담 또는 피해구제 접수사례가 총 9913건으로 2000년과 대비하여 무려 314.2% 증가합니다.
- 특히 올해 들어서는 1~2월 사이에 지난해 동안 접수건수의 55.6%에 해당하는 총 5510건이 접수됩니다.

대표적인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1) 무료라며 회원 가입시킨 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 청구, 2) 신용조회 명목으로 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 3) 약관 교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체결 주장, 4) 할인서비스 계약불이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할인회원권업에 대한 관리강화 및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제도마련 등 실질적 소비자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지난 2002년 2월 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을 통해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 '계약서 교부의무 부과' 등 법적 규제기반을 마련합니다.

<참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여신전문금융법의 주요 개정내용

(질의 1)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 포함)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전화권유판매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할인회원권업체가 최소한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신고제에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사업자들만 동 업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는가?
- 이러한 조치로 인해 부실 할인회원권업자의 시장진입 요건을 강화시킴으로써 사전에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질의 2)

현행 할인회원권업체의 대금결제 시스템 구조상 신용이 불량한 할인회원권업체가 가입회원에게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여신전문금융법의 주요 개정내용

법 률	개 정 내 용	개 선 사 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7월1일부터 시행)	할인회원권업의 영업수단인 이른바 '텔레마케팅'을 '전화권유판매업'으로 명시	종전에는 '텔레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방문판매업에 해당 여부가 불명확했음.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명시(제7조)	전화로 인한 일방적 계약에 대한 부당성을 명시
	공정위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등의 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제33조)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제35조)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인식 강화
여신전문금융법 (7월1일부터 시행예정)	'결제대행업체'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를 '신용카드가맹점'에 포함시킴.(제12조)	결제대행업체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함.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제16조)	소비자권익 보호·강화

- 이에 소비자피해 발생시 보상 재원을 별도로 마련·비축해 둘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현재 다단계 판매업자들에 시행하고 있는 공탁제도 또는 공제회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참조> 이번 개정으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는 공탁금액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음.

※ 할인회원권업이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가전제품·화장품·예식장·여행·상품권·호텔·콘도미니엄 등 상품이나 서비스 관련 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으로 회원가입자는 구입하는 물품대금이나 서비스, 시설물 등의 이용요금에 대한 할인서비스를 받음.

○따라서 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종합체육시설회원권과 같이 회원이 시설우선이용권·회원권 양도권·명의개서청구권 등과 같은 권리를 갖는 고유의 회원권과는 성격이 다름.

자기 권한 늘리기에 급급하기보다 규제개혁 기구로서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 현황 및 문제점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애로가 많다는 이유로 형사사건과 같이 압수 수색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공정거래 분야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99년부터 매년마다 조사권을 강화해 왔습니다.

- 종전에 법 위반사실이 있어야 조사할 수 있었으나, 위반 혐의만 있어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조사불응시 과태료를 대폭 상향조정하였습니다.(종업원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열사에 대한 우회적인 부당지원을 막는다는 취지로 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확보하였습니다.
- 당초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으나, 시한이 다가오자 작년에 3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질의 1)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조사권한이나 제도상 현재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조사 권한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선진국은 형벌을 가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과태료만 매기기 때문에 사법경찰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질의 2)

그간 공정위가 의욕에 앞서 규제위주의 제도를 운영한 결과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과 같이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거나 위헌성이 제기되는 조항이 늘고 있는데,

※ 지난 2001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등의 제재 조항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2중 처벌 금지와 과잉금지, 무죄추정금지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바 있습니다.

- 공정위는 권한을 늘리려고 하기에 앞서 달라진 경제환경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를 정비하여 규제개혁 기구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朴炳錫 委員

- 공동행위관련 행정지도에 의한 담합에 대해 -
행정기관의 관행적 행정지도로 공동행위 조장
공정위 담합판정으로 제재, 업계 반발 많아 공동행위 제보자 보상금 지급도 단 3건에 그쳐
정부부처 견해차이 조정과 대책 마련 필요

○행정기관이 법률상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기업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 행정지도함. 사실상 공동행위를 조장함으로 인해 담합가능성이 나날이 커짐.

○공정거래법상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제58조)도 있지만 대부분 법령의 간접적인 근거에 따르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의 행위라는 측면에서 높은 공적인 신뢰성

○지난 88년 이후 행정행위가 개입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는 5건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는 나름대로 국민감정을 감안한 타당한 조치라고 주장함. 이에 반해 공정위는 행정기관의 조치가 법을 위반한 공동행위를 조장하고 담합이라 규정

○이같은 상반된 결정으로 소송까지 가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결국 피해

○공정위와 정부부처는 사전협의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할 것임.
○공동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문제
○공정위는 그동안 공동행위 적발을 위해 공동행위 참여자가 신고할 경우 시정조치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97년 4월부터 시행
○그러나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혜택보다 공동행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부당이익이 커 신고효과 미흡 단 3건에 불과
○공정위는 공동행위 근절을 위해 제3자가 제보할 경우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명신고 경우만 조사할 수 있다면 신고효과가 사실상 미미할 것입니다.

비실명 신고도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에만 의지하지 말고 정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행위에 의한 담합을 근절해야 합니다.

○李性憲 委員

승용차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대책

□ 질의사항

현대자동차는 1998년 12월 1일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주식을 일부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1999년 1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계열회사인 인천제철, 현대캐피탈과 함께 51%를 취득하여 1999년 3월 30일 기업결합행위를 하였습니다.

1998년 말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규모는 총 78만대로 현대, 대우(쌍용자동차 포함), 기아의 3개사가 지배하는 과점형 시장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차종별 시장점유현황을 보면 승용차의 경우 현대가 39.1%, 기아가 16.5%, 대우 36.8%, 삼성 7.3% 수준의 내수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1. 문제의식 없었던 현대와 기아의 기업결합

당시 기업결합에 대해서 승용차 부문에선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의 점유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었던 추세(1995 74% - 1998년 55.6%)이고 대우의 점유율이 증가추세(1995년 20.5%~36.8%)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부도상태였던 기아와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는 “승용차와 버스부문에서 산업합리화 효과와 국제경쟁력 강화 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반면 트럭의 경우에는 현대가 50.3%, 기아가 44.3%, 대우가 4.6%, 삼성이 0.5%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유율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999년 4월 7일, 1t이상 5t이하의 상용트럭부문에 있어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가 있다고 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기업결합에 의해 이 분야에서 현대는 94.6%의 독점을 보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가격인상률을 외국에 수출하는 동일규격 차량의 외화표시 가격인상률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독점에 의해 가격인상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2. 기업결합에 의해 독점 현상 발생

기업결합행위가 있은 후 3년이 지난 2002년 2월 현재 자동차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의 승용차 부문 점유율은 현대가 49.4%, 기아가 24.2%로 73.6%의 독점상태입니다. 3년 사이에 18%의 점유율이 높아 졌습니다. 과점에서 독점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대우사태로 인해 대우자동차가 부도가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대-기아의 독점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변화를 공정거래위가 가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기아자동차의 독점상황으로 인해 시장에서 가격, 차량품질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3. 소비자 보호원의 자동차 피해구제사례 급증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밝힌 2000년도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건수를 보면 총 2336건으로 1999년의 1709건에 비하여 무려 36.7%가 증가했으며 이중 자동차 품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자동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 1563건 중 회사별로 보면 현대가 673건, 기아가 565건, 대우가 308건 등입니다. 현대-기아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소비자피해 중 품질관련 비율이 97년 77.6%, 98년 82.7%, 2000년 85.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보원의 2001년도 자동차피해구제 결과를 보

면 현대가 534건, 기아가 424건, 대우가 134건, 쌍용이 145건입니다. 이 역시 현대-기아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높으니까 피해건수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97년부터 법제화된 자동차리콜 현황을 보면 현대-기아의 신차 중심으로 대규모 리콜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신차중심으로 리콜도 급증

산타페는 단 7개월 사이에 무려 2만5천대의 리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공업협동조합에 확인한 결과 동기간에 팔린 산타페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검증도 되지 않은 신차를 판매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최근 리콜현황
- ○ 1999년 6월 1일부터 2001년 3월 30일까지 판매된 베르나 4만6000대
- ○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4월 23일까지 판매된 산타페 2200대
- ○ 2000년 11월 15일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판매된 산타페 2만2913대
- ○ 2001년 2월 17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판매된 테라칸 1만962만대

이 같은 결과는 독점에 의해 경쟁이 없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모델에 대한 충분한 시험기간을 거치지 않고 마케팅측면만을 고려하여 조기 출시됨에 따라 자동차 품질에 관한 검증이 미흡한 까닭이라고 판단합니다.

5. 타사카드 임의 한도 설정 및 계열사 카드이용 강요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최근 시중상황을 보면 현대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 대하여 카드결제금액 한도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높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차 구매시 카드결제한도를 삼성카드는 600만 원, 기타 카드는 400만 원으로 각각 제한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하게 하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부족한 현금은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도록 권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독점의 폐해입니다. 또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부당행위입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도록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현재 승용차 시장은 현대-기아의 점유율이 73.6%로 순수독점 상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자동차 리콜 결과와 최근 현대의 판매행위에서 보듯 이러한 결과는 가격과 품질 측면에서 그대로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될 뿐이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대우와 르노삼성의 점유율이 확대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6. 독점의 폐해 막을 소비자 보호책 찾아야

독점이 갖는 피해는 첫째, 가격조절, 출고조절, 계열사 캐피탈 이용 강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소홀히 하여 경제의 능률을 제고시키지 못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없게 되는데 최근 현대-기아 승용차의 리콜 증대는 이러한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셋째, 가격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독점이윤의 계속적인 향유가 가능하여 소비자에게 손실을 주게 됩니다. 최근 현대-기아의 경상이익은 이러한 결과로 보여 집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승용차시장에서의 현대-기아의 독점상황을 기업분할권이 없는 현 상황에서 우선 공정위가 조사해서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23조)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3조의2)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가격담합 등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과 감시감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승용차 시장에서 대우나 르노삼성이 점유율을 높혀 나가지 않는 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가격담합 등 독점으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재계 구조조정본부 상설화 문제 없나

□ 질의사항

IMF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의 발생원인으로 한국경제의 내부적, 구조적 시스템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정부, 금융, 기업(재벌), 노동의 4대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그 처방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4대부분 구조조정을 임기중에 완료한다는 정책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8년 2월 6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취임전에 30대 재벌총수들과 <기업구조조정 5대원칙-①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②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③ 재무구조의 개선, ④ 핵심역량의 집중, ⑤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98년 2월 14일 공정거래법을 출자총액한도(순자산의 25%) 폐지, 30대 재벌 신규 채무보증 금지 및 기존 채무보증 2000년 3월 말까지 해소 등을 골자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재계는 김대중 당선자와의 합의 정신에 따라 DJ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재벌개혁정책에 따라 '총수 1인지배체제'의 상징이던 회장실, 비서실, 기조실을 폐지하는 대신 구조조정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98년 7월 4일 전경련 회장단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5 플러스 3" 원칙이라는 8개 합의 사항이 이뤄졌고 7월 26일에는 재계-정부 간담회에서 청와대 회동 결과를 명문화하고 상설화된 대화체제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이른바 재벌개혁 또는 재벌해체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98년 12월 7일에는 재계-정부-채권은행단의 합의하에 5대그룹 구조조정 추진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구조조정 작업을 지연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룹 자체적인 손실부담을 위해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범위내의 행위는 허용한다"는 역할을 배당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5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했습니다. 1차(98.5.9~6.20)에는 적발한 거래규모가 7262억 원, 2차(98.6.29~7.24)에는 1984억 원, 3차(99.5.6~7.3)에는 8조4546억 원, 4차(2000.8.16~10.14)에는 5791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삼성, LG, SK 등 재벌 그룹이 IMF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했던 구조조정본부를 상설 조직으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지난 2월 5개팀 80여명으로 구성된 구조조정본부를 7개팀 100여명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존의 비서·재무·인사·경영진단·기획홍보팀에서 기획팀을 독립시키고 법무팀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G 구조본은 사업조정, 인사지원, 경영지원, 재무개선, 홍보 등 5개팀으로 돼 있으며 각 팀은 외자유치와 사업구조조정(사업조정팀), 부채비율 축소 및 출자구조재편(재무개선팀), 구조조정 전략과 방향설정 업무(경영지원팀) 등을 맡고 있습니다.

SK 구조본은 바이오 중국사업 등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장기전략 사업계획 수립 조정과 계열사간 합병 재무구조 개선 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구조조정, 경영지원, 홍보 등 3개팀으로 구성된 구조조정본부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구조조정본부가 상설화돼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98년 2월 그룹 기조실이나 회장실을 폐쇄한 것은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다고 판단한 재벌그룹의 선단식 경영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일종의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선단식 경영조직을 해체하여 각 계열사의 독립경영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재벌해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정도가 지나서 한시적인 조직이 다시 확대개편되고 상설화 되는 것은 이름만 구조조정본부이지 사실상 과거의 회장실, 비서실, 기조실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다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정위원장 입장에서 "5 플러스 3"의 원칙과 합의가 아직도 유효한 것이라 판단하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조실의 부활을 의미하는 구조조정본부의 상설화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중앙 컨트롤 타워가 있는 한 계열사 간의 부당내부거래는 근절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부당내부거래의 근절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재계가 요구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만들기”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무조건 규제나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하여금 독점이나 과점으로 인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기회를 스스로 방지하도록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상도(商道)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보위 : 법규위반 자격미달! 낙하산 인사!
이승희위원장은 명예롭게 사퇴해야!

- 지난 2월 19일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셨는데요, 이승희 위원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당시 언론보도와 시민단체의 평가를 보면 “청소년업무와 관련한 실무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전문가 등용이라며 자질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29일 청화대 인사 개편을 전후로 해서 무려 5명의 비서관들이 정부 부처로 내려가 낙하산 인사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홍근 청와대대변인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이상환 정무기획비서관은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대곤 보도지원비서관은 2002월드컵문화시민중앙협의회 사무총장으로 △현정택 정책비서관은 여성부 차관으로 그리고 △여성정책비서관이었던 이승희위원장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정권말기라고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무작위로 차출해 낙하산 인사로 계속 내려보낸다면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또 현정택 정책비서관이나 이승희위원장처럼 전혀 관련 직무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차관이나 위원장으로 내려온다면 관련 부처 공무원들에게 영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또 이로 인한 관련 부처의 인사적체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 대우위장계열사 제대로 조사했나, 안했나?

○李性憲 委員 … 99년 8월 주식회사 대우의 주채권은행은 한빛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빛은행에서 박현수 경영관리단장이 나와서 파견근무를 했고 당시 경영진은 현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위장계열사를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99년 8월 이전과 이후의 책임소재 부분은 다르게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우자동차의 경우에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정찬원 경영관리단장이 파견되어 근무했고 당시 경영진은 이영국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로 모든 책임을 金宇中 씨한테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부분이 잘못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99년 8월 이전까지의 책임에 대해서는 김우중 씨한테 물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채권단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채권단이 책임질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2월 상임위 때 질의한 것인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시기 중에서 99년 8월 이전까지의 책임에 대해서는 당시 김우중 회장에게 물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채권단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채권단이 책임질 부분이 있지 않은가 언급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채권단과 채권단에서 임명한 당시 경영진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에 대해 조사해서 결과를 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는데요…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계속 위장계열사 문제는 언급할거니까 여기서 접구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왜 조사를 제대로 받지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요받지 않는다, 법과 절차에 다라서 엄격하게 처리하겠다,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아니지요. 직원들이 보고하기를 자료를 잘 안 낸다고 하니까 조사를 제대로 받으라고 제가 한 것입니다. 적당히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하는 데다, 조사를 제대로 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 지난번 회의 답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우위장계열사를 조사하면서 남상국 사장을 1번 위원장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맞죠? 정말 한번 밖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사무실 외 장소에서는 만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만약 나중에라도 위장계열사 관련해 남상국 사장을 추가로 만난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요받지 않는다"고 남상국 사장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요받지 않는다"는 요지로 남상국 사장에게 얘기를 했습니까?

○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하이테크하우징'이란 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요약문이 벌써 대우건설 경영진에 의해 입수되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철저히 회사의 존폐 문제가 걸린 예민한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대우건설이 단순히 한번 위원장을 만나고 추상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계기는 아마 대우에 근무했던 직원이 퇴직한 직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李性憲 委員 김우일 상무가 제보했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가명으로 했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李性憲 委員 조사할 때 김우일 상무를 불러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公正去來委員會獨占局企業集團課長 金元埈 제가 담당과장입니다마는 없습니다.

○李性憲 委員 그러면 통상적으로 공정위에서는 제보가 들어오더라도 그 제보를 누가 했는지 또 제보의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를 시작합니까, 아니면 제보만 들어오면 무조건 조사를 합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 당시의 제보내용이 너무나 정확했고……

○李性憲 委員 저는 대충 제보한 사람이 누구라고 알고 있는데 제보한 사람을 담당자들이 만나서 정확히 의견을 듣고 했는지 아니면 제보된 내용만으로 조사했습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저희는 이렇게 됩니다. 본인이 자기 실명을 밝혔을 때는 물론 그 사람을 불러서 의견을 듣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명으로 한 경우에 이것의 내용이 너무나 진실된다고 저희들이 믿으면 저희들에게 직권조사라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냥 제보내용만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李性憲 委員 이번에 조사할 때는 제보자 신원을 확인하거나 제보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李性憲 委員 담당했던 분, 그것 확실합니까?

○公正去來委員會獨占局企業集團課長 金元埈 그렇습니다.

○ 지난 2월 하순경에 보도된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농수축산물 가공 공급업체인 대양실업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운영해 온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사가 (주)대우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아라코'란 자회사를 통해 대우그룹 계열사의 단체급식을 독점해 왔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이 회사는 대우 출신 임원들이 분사형태로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초기 대표이사를 지낸 박아무개씨가 다시 대우로 '원대복귀'하는 등 (주)대우와 인사교류를 해 왔다"면서 결론적으로 "(주)대우-대양실업-아라코"로 이어지는 2개 회사도 대우위장계열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 이 기사를 본 적이 있거나 기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아니 대우위장계열사 발표가 불과 1달전에 이뤄졌고 2월 정무위가 끝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 다시 기사내용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우기획조정실 임원 출신인 김아무개 씨는 [대우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지난 80년 이후 상당수 위장계열사를 설립했다"며 "아라코도 그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증언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기사를 '대우위장계열사 제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번 공정위가 조사했을 때처럼 무명이 아닙니다. 실명입니다. 또 기사를 쓴 기자도 나와 있고, 구체적인 업체명과

혐의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 이와 유사한 건으로 지난 4월 1일자로 보도되었던 '하이마트 분식회계' 건입니다.

하이마트와 관련한 기사에 대해 보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아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위장계열사 조사를 착수한다면서 신분도 확인되지 않는 무명의 제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진실되다고 믿는다'면서 조사에 착수하고 언론에 보도된 기사는 뭐가 조사착수 기준에 어긋나서 내용조차 파악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또한 관련 기사를 자료로 제출하니까, 대우위장계열사 여부를 조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사내용대로 "하이마트가 2000년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2000년 12월 대규모 유상증자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소유로 추정되는 7억8000만 원 어치의 주식을 임의 처분, 대우그룹 위장계열사로부터 벗어났다"것이 사실이라면 공정위의 위장계열사 판단 기준인 통상적인 범위 초과 자금대차 및 거래관계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업계선 수군수군 공정위는 캄캄

○대우 위장계열사 의혹 대양실업의 실체

(주)대우-대양실업-아라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맺고 있었던 것. 그러나 대양실업과 아라코 두 회사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전 회장의 위장계열사라고 발표한 성내SRC등 6개사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김 전 회장의 위장계열사 실태조사 대상에도 두 회사가 포함되지 않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자회사 '아라코' 통해 대우 계열사 급식 전담
최근 아라코 지분 해외매각… 의혹 털어내기
공정위, 대우 워크아웃 이후 조사 한 번 안해

○(주)대우와 임원진 '인사교류'

공정위 관계자는 "(주)대우의 위장계열사는 지난 1월 발표한 성내SRC 등 6개사가 전부"라며 "대양실업과 아라코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양실업 신동필 사장은 "대우의 위장계열사란 의혹을 받게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회사로 아라코를 두고 있다는 점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8월 아라코 보유 지분 51% 전량을 미국 아라마크에 매각했다"고 말했다.

대양실업이 대우 계열사와 직거래를 하고 있는 아라코와 결별함으로써 대우그룹과의 관계도 다시 정리 중이라는 설명.

그러나 아라코 지분 매각금 규모는 "회사 내부 기밀"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신 사장의 말에도 불구, 대양실업이 김 전 회장의 위장 계열사 의혹을 받게 된 배경은 (주)아라코가 그동안 대우계열사 단체급식을 독점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아라코는 지난 93년 설립된 단체급식 전문업체. 설립 이후 대우그룹 계열사 구내식당 등의 급식을 전담하면서 신장세를 거듭해 현재 연간 5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라코가 대우의 위장계열사란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그런 회사를 대우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지 3년이 되도록 공정위가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문은 공정위의 위장 계열사 판정기준인 △임원을 통한 지분 보유 △임원겸임 △통상적인 범위 초과 자금대차 및 거래관계 등에 비춰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

대우그룹 계열사 식당 운영 등으로 성장한 아라코의 경우 공정위의 이 조사 기준에 해당된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라코는 서울역 앞 대우센터와 계열 학교법인 아주대병원, 대우중공업 등 그룹 계열사 식당 등 전국 170여 개 지점(2000년 4월 현재)을 운영 중이다.

대우 기획조정실(기조실) 임원 출신인 김아무개씨는 "대우는 김 전회장의 지시로 지난 80년 이후 상당수 위장 계열사를 설립했다"며 "아라코도 그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아라코가 그동안 외부의 눈길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사가 (주)대우와는 외견상 지분관계가 없는 무역회사인 대양실업의 자회사로 등록돼 있는 등 이중삼중의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 회사는 대양실업과 미국 유명 단체 급식업체인 아라마크사의 합작사로 알려지면서 대우그룹 계열사로 묶이지 않았다.

대우 출신 임원들에 따르면 아라코는 '그룹 기조실 작품'으로 공정위의 조사에 대비, 주식 위장 분산 등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아라코의 설립 과정을 보면 상당히 치밀한 계획

아래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외견상으로는 지난 92년 5월 설립된 대양실업이 이 회사의 모기업이다. 대양실업은 (주)대우 기조실 신입사원을 이사로 선임하고, 외부에서 무역 전문가를 영입해 대표이사를 맡기는 형태로 경영진을 구성했다.

이 회사의 초기 자본금은 2억7000만 원. 무역업을 주사업으로 출발한 이 회사는 출범 10개월 후인 93년 3월부터 농·수·축산물 유통과 단체급식사업 투자에 나서는 등 사업 확대에 나섰다.

자회사 형태로 아라코를 설립한 것도 이 즈음. 대양실업은 93년 6월 자본금의 2배가 넘는 7억여 원을 투자, 미국의 유명 단체 급식업체인 아라마크사와 합작으로 아라코를 설립했다.

대양실업의 설립 초기에 어떻게 자본금의 2배가 넘는 돈을 투자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업계에서는 (주)대우가 뒷돈을 댄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당시 (주)대우는 분식회계를 통해 많은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상당수 자금이 위장 계열사 설립에 들어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대양실업 설립 초기 대표이사를 맡았던 박아무개씨가 지난 96년 (주)대우 무역부문 이사로 자리를 옮긴 점도 아라코와 (주)대우간의 깊은 연관성을 드러낸 대목이다.

○대우서 뒷돈 대 아라코 설립?

아라코는 지난 93년 설립 당시 자본금이 15억 원이었으나 지난 95년 유상증자를 실시, 2001년 말 현재 자본금이 23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 93년 6월부터 미국 아라마크에 직원 연수를 보내는 등 본격적으로 단체급식 사업에 나선 아라코는 이듬해인 94년 5월 아주대병원에 식당을 오픈한데 이어, 그해 6월 대우그룹 본사 식당 운영권을 잇따라 따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 96년 9월에는 대우중공업 본사 및 4개 공장 식당 운영에 나섰고 97년 8월 경수로사업단(KEDO·북한 신포 소재) 식당 운영업체로 선정돼 북한에도 진출했다.

이 같은 사업확장으로 이 회사는 지난 99년 464억 원, 2000년 529억 원의 매출을 올려 5억 7000만 원과 5억8000만 원의 흑자를 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초기 (주)대우 해외영업본부 2부장을 지낸 이종천 씨(58)에 이어, 현재는 97년부터 (주)대우 무역부문 국내유통본부 영업지원팀 이사 출신 정순석 씨(57)가 맡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아라코 측은 "사업상 대우그룹과 깊은 연관을 맺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위장 계열사는 아니다"라며 "대우 출신이 설립한 대양실업이 지난해 8월 아라코 지분 51% 전량을 미국 아라마크에 매각, 현재 미국인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 회사"라고 대우의 위장 계열사 의혹을 부인했다.

코스닥 등록법인 S사도 수상하다

○김우중 측근들 경영진 포진·지분 보유

대양실업이 김우중 전 대우회장이 설립한 위장 계열사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등록법인인 S사도 위장 계열사 의혹을 받고 있다.

S사는 그동안 M&A(기업 인수 및 합병)설에 휘말리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세간의 주목을 받아 왔다. 자본금 규모가 1백억원대에 불과한 소형업체인 S사의 경우 연간 매출이 5백억원대에 이르며, 현재 K씨가 장부상 대주주로 등록돼 있다.

S사가 김 전 회장의 위장 계열사로 의심을 받는 이유는 이 회사의 핵심 임원들이 대부분 대우그룹 출신인데다, 대우그룹이 침몰한 직후 김 전 회장의 핵심측근이 이 회사 경영진으로 자리를 옮긴 때문이다.

게다가 이 회사의 지분도 김 전 회장의 측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이마트 567억 분식회계
2000년에만 100억대 탈세 … 사장 "결손금 메웠다"

대우그룹의 위장계열사로 알려진 하이마트(사장 선종구·구 한국신용유통)가 2000년 567억 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수백억원대의 매출액을 축소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회계를 분식, 2000년에만 100억 원대 이상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하이마트가 2000년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그해 12월 대규모 유상증자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소유로 추정되는 7억 8000만 원 어치의 주식을 임의 처분, 대우그룹 위장계열사로부터 벗어났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우그룹 공적자금 회수에도 차질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일신문이 단독 입수한 하이마트의 내부자료(사진)에 따르면 대우·LG·삼성의 전자제품 판매액 각 3777억 원·2417억 원·2115억 원을 포함해 2000년 매출액이 1조 17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매출원가가 9530억 원이어서 매출이익이 2227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하이마트는 2000년 결산보고서를 통해 내부자료보다 매출액은 567억 원이 적은 1조 1191억 원, 매출원가는 60억 원이 적은 9471억 원으로 발표, 매출이익을 507억 원이나 축소한 것이다. 당초 하이마트는 99년에 비해 매출액이 2배 가까이 급신장했으나 매출이익률이 6.7% 줄어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하이마트측은 28일

○"대우전자 상품매출 673억 원이 내부자료의 매출액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선종구 사장은 27일 기자와 통화에서 "대우전자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대우가 충당해야 할 1200여억 원에 이르는 결손금을 메운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마트가 2000년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정부의 대우그룹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이마트는 이같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신성통상과 고려가 보유한 20억 원 가까운 지분을 저평가된 가격으로 임의처분, 대우그룹 위장계열사에서 벗어났다.

(답변서)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공정위는 수사권 부여와 관련 사법경찰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성있는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여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의 강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사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공정위가 「사법경찰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대부분(37개 분야)의 행정기관이 「사법경찰관리법」에 근거하여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입니다.

□ 따라서 관련부처인 법무부에 정식으로 「사법경찰관리법」의 개정 협조를 요청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정위 직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재계의 반대에 대한 의견과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 재계는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갖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는 은밀하고 지능적이며 고도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비록 재계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이해와 설득 및 여론 확산 등을 통해 강제조사권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온라인 우표제를 둘러싼 공방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네티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온라인 우표제는 인터넷 대량메일에 대한 최초의 유료화 시도입니다.

○이는 스팸메일 방지 등 메일서비스 차별화 경쟁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우표요금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요금수준에 대해 타 업체와 담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공정위는 온라인 우표제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메일 자유모임의 「메일계정 전환운동」이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향후, 공정위는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는 한편, 온라인 우표제가 거래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분석하여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4. "출판및인쇄진흥법안"이 온라인서점의 책값할인율을 10% 이내로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간행물정가제를 의무화하고 온라인서점의 할인율을 제한(10%)하는 "출판및인쇄진흥법 제

정안"이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 따라서 공정위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4.16) 등에 참석하여 공정거래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된 정가제를 의무화하여 법 체계상 혼란이 발생하는 등 자유시장경제원리와 서점들의 영업상 자유의 침해소지가 있는 도서정가제의 문제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앞으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정가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논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가 확대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진 것에서 보듯이 공정위의 재벌정책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데, 결국 공정위가 재벌개혁에서 손을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경제의 글로벌화·정보화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바람직한 투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러한 법개정 취지는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출자는 허용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되, 무분별한 확장경영 행태는 계속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개정된 시행령은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출자, 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 등 개정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법개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면서 구체화한 것으로,

□ 우리 위원회는 대기업집단정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통해 시장규율을 보완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경영행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6.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재계요구에 너무 양보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 금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개정법률의 틀과 취지의 범위내에서 법집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 또한 금번 시행령 개정시 실물경제 상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 재경부·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협회·전경련·중기협중앙회·참여연대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습니다.

□ 국제카르텔에 대한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7.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의 제재에 대한 각국의 반응 및 해당업체들이 반발할 경우의 대책
8. 향후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계획 및 효과적인 조사방안
9. 외국경쟁당국에 의한 국내기업의 제재를 최소화하고 억울한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미국·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되었으므로 외교적 마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이번 조치를 내리기 전 미국, 독일 및 일본 대사와 각각 만나 조사배경,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였는 바, 이들 국가의 대사들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미국, EU 등의 경쟁당국은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향후 국제카르텔의 근절 노력에 세계 각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업체들이 이번 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이들 업체들이 과징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압류 등 국내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조사경험을 토대로 국내기업 및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다른 품목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 또한, 원활한 국제카르텔 조사를 위하여 미국·EU·일본 등 주요국과 양자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양자협력협정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호주와 협정체결을 진행 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외국 경쟁당국의 역외적용으로부터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기업들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작년 11월 "미·EU 경쟁당국의 국제카르텔 및 기업결합 사건의 처리 동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 금년에도 국제활동이 많은 기업에 대하여 3~4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고 수수료 담합의혹이 있는데, 조사를 하고도 시정조치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신용카드 수수료율 담합여부에 대한 시정조치가 늦어진 이유는 명백한 합의증거자료를 남기지 않고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료조사, 수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수수료율 담합건과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4.24)에서 4개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공동행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여 이들 업체에 대하여 행위금지 시정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과 함께 총 233억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1. 시정조치 이후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각 사가 비슷하게 인하를 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 신용카드사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해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12. 공정위가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이의신청을 할 경우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깎아 주는 행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이의제기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 공정위가 이의신청시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것은 원심결시 주장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의 제출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 공정위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관련 법령 및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朴柱宣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지난해 6개분야의 포괄적 시장개선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의약, 건설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 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사후점검 진행상황과 결과, 그리고 어떠한 보완대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작년도 6개 분야의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한 결과,

○ 건설분야에 있어서 레미콘·시멘트업 분야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하였으며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입찰제 시행을 추진하는 등의 제도개선 측면에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이 결과, 하도급법 위반업체 비중이 2000년도 82%에서 2001년도 71%로 개선된 바 있습니다.
- 건설분야의 특성상 아직도 불공정하도급 관행이 남아 있으나, 이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 금년의 경우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3만개 업체로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 이외에도 기업구매금융 등 현금결제비율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약분야에 있어서는 작년도의 의약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시정하였으며

-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보완,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개정, 대형병원의 의약품도매상 경유제도 폐지(2003.1월 예정) 등의 제도개선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보완내용 : 병원측의 의약품 구입시 구입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상환해 주던 종전 제도는 병원측의 가격할인인센티브를 제거하는 문제가 있어 의약품 저가구입 시 병원측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개선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간의 담합이 있는지 여부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계속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2.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경쟁정책을 수립하여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맞춤형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하였거나 진행중인 정책 및 향후 계획 중인 정책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산업별 시장개선사업을 작년에 이어 추진 중입니다.

* 6개 부문 : 에너지, 금융, 유통, 부동산, 여가

산업 등 기타 서비스, 교육

○ 1~3월 중 분야별 규제현황 및 시장상황,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예비검토를 실시하였으며,

- LPG 관련 업종, 연예인·프로스포츠·회원제사업분야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실질적인 소비자주권 확보를 위해 「소비자 그룹별시책」도 병행 추진 중입니다.

○ 노인·청소년 등 6개 그룹 별로 소비자 불만·피해 빈발사항 등 불공정관행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예비검토 중입니다.

- 노인, 아동 계층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 예비검토를 토대로 상반기중 현장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아울러 하반기에는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외에도 IT분야 등 새로이 형성되는 시장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등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거부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하는 등 각 시장 특성별로 취약요인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현재 필수설비의 요건 및 적용범위, 정당한 접근거부 사유, 법위반 유형 등을 담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고시 개정안 마련 중

3. 최근 사법부는 공정위 심결에 대한 불복소송을 2심에서 3심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공정위 입장 및 문제점
4. 미국·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재판관할과 이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
5. 만약 3심제(1심이 행정법원)로 변경될 경우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공정위 위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공정거래사건의 심급이 현행의 2심제에서 3심제로 늘어나게 되면 사건처리가 지연되어 소비자 피해가 현저한 경쟁질서 위반행위의 조속한 시정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 공정위 심결은 변호사들을 비롯한 다수의 전문위원이 엄격한 준사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1심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결의 절차, 방법, 내용 등이 법원의 재판과 거의 유사함

□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사건은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쟁당국의 준사법적 심결기능을 감안하여 2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만약 불복소송을 3심제로 할 경우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준사법적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제약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경쟁제한적이고 소비자피해가 현저한 사건들의 검토가 경제적 측면보다는 법률적 측면에 치중하게 되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립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의 분석기준과 공정위가 경제적 효과분석결과를 기업결합의 승인여부를 판단하는데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기업결합은 효율성 증대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독과점 형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부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현재 기업결합의 경제분석은 시장집중도, 시장봉쇄효과, 해외경쟁도입수준, 진입가능성 등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향후 기업결합 심사시에 경제적 효과 등 경제분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7. 기업결합심사시 새로운 경제환경에 부합하는 시장획정의 기준과 경쟁제한성 판단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장획정기준과 경쟁제한성 판단원칙은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정확한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분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최근 글로벌화나 정보화 등으로 시장획정원칙 등을 재정립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쟁당국들은 시장획

정 등에 관한 종래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개별사안별로 필요한 고려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 우리도 시장획정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사안별로 필요한 고려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8. 기업결합을 사전신고제도로 전환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출시킬 우려가 있고 기업결합을 위축시켜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과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기업결합신고제도는 당초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기업부담 완화차원에서 '96.12월 원칙적 사후신고제로 전환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후신고를 받아 시정조치할 경우 물리적 시설·인력의 원상복구가 어려워지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 따라서, 선진국들과 같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신고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며,

○ 오히려 사전신고는 결합의 승인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M&A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 참고로 미국, EU, 독일은 모든 기업결합에 대해서, 일본은 주식취득 외의 모든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업비밀 보호를 위한 장치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9.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제한해 온 이유와 지주회사제도를 적극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다수 계열사를 소유·지배하여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87년 이후 이를 금지하였습니다.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과거와 같은 선단식 경영을 지양하고, 핵심역량의 육성을 통한 적극적 기업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따라 지주회사가 분사화를 통한 비주력사업의 분리·매각, 외자유치 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99. 4월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채비율 100%, 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비상장 50%, 상장 30%) 등 설립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 2002. 3월 현재 (주)LGCI, 동원엔터프라이즈(주) 등 21개 지주회사 설립·전환

10. 최근 공정위가 채무보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해외금융기관을 통한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아 채무보증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공정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한 채무보증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것은

○ 채무보증을 통해 제한된 국내금융자원의 편중을 초래하는 문제를 차단하고 계열사간 동반부실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반면, 해외채무보증은 국내에서 정확한 실사가 불가능하고 국내금융자원의 편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으로 해외보증까지 규제하는 문제는 규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기업집단 간 교차 상호출자나 역외펀드와 같은 우회적 상호출자에 대한 공정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조항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탈법행위는 시정조치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탈법적 상호출자금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12. 동종업종기업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에서 제외한 배경과 매출액기준 등 시행령상의 기준대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동종업종 영위회사 및 밀접관련사업 영위회사 출자를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대상으로 한 것은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출자는 허용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동종업종 출자의 경우 출자회사의 핵심업종은 전체 매출액에서 25%이상이어야 하며 기업이 동태적으로 다른 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하여 매출액비중이 2위로서 15%이상인 업종도 포함됩니다.

○ 피출자회사의 경우 출자회사의 핵심업종을 전체 매출액의 25%이상 최대비중으로 영위하고 있어야 출자회사의 핵심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 밀접관련 출자의 경우 업종은 다르더라도 출자회사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를 적용제외 대상으로서,

○ 판매, 유지·관리·보수, 원재료·부품공급 등에서 거래비중 50%이상이거나 다른 회사가 도저히 공급할 수 없는 설비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를 그 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13.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기준 중 관련사업 출자요건으로 출자회사와 피출자회사 간 거래관계나 필수설비 공급관계 등을 정한 이유와 배경을 물으셨습니다.

□ 출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한 출자를 적용제외대상으로 한 것은 업종은 다르더라도 출자회사에 필수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는 허용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판매, 유지·관리·보수, 원재료·부품공급 등에서 거래비중이 50%이상인 회사이거나 다른 회사가 도저히 제공할 수 없는 필수적인 설비·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는 출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적용제외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14. 출자총액제한 한도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제한 내용의 공시만으로 의결권행사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정위 입장 및 그 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출자한도초과된 회사에 대하여 대상주식의 의결권행사금지 공시를 하도록 하여

○ 소액주주, 채권자등 외부감시자에 의한 기업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 현행 개정법에서는 공시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조항 등을 신설하였으므로

○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를 통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국제카르텔에 대한 경쟁법의 역외적용 관련

15. 공정위의 조치를 실효성 있게 집행할 방안을 물으셨고,

16.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역외적용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국가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정위의 조치를 실효성있게 집행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국제카르텔 참여업체들은 공정위의 조치를 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 만약 이들이 과징금 납부 등을 거부할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 압류 등 국내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공정위는 외국기업에 대한 원활한 조사 및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미국·EU·일본·독일·프랑스 등 주요국과 양자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 양자협력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양자협력협정 체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호주와 양자협력협정 체결을 협의중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협의과정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호주와의 양자협력협정 운용경험을 토대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 체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카드수수료 담합, 전업카드사와 은행들간의 단말기 사용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여러차례 신용카드사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바 있음. 공정위의 입장에서 신용카드와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 신용카드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동 분야의 시장구조가 독과점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정위는 금년도에 신용카드업에 대한 시장구조개선대책을 추진하면서 제도적 개선 사항을 분석하고 있는 바,

○ 기존의 신용카드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거나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문제 등

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유통업계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음(전업신용카드, 은행의 겸업신용카드는 아직도 허가제임)

18. 신용카드 수수료를 업종이나 매장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사들은 각자 자사의 영업방침에 의거 업종별, 매출액의 수준, 매장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율을 결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금년도에 신용카드업에 대한 시장구조개선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 수수료 적용 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와

○ 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율을 담합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19. 최근 일부 중간상인들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쌀을 구매하게 하는 형태의 소위 카드깡을 통하여 폭리를 취하고, 이렇게 구입한 쌀을 저가에 대량으로 매도하여 미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소위 카드깡)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로서,

○ 동 행위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금융감독원에서 규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제3호 참조

□ 따라서 공정위는 카드깡업자의 이러한 저가매도행위를 신고받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이를 이첩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20. 최근 일부 벤처기업이 기술개발보다는 금융시장을 통한 돈벌이에 매달리면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벤처기업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벤처기업정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다만, 일부 벤처기업이 기술개발보다는 증권시장에서 모은 자금과 과다한 차입금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기업인수 등 사업영역 확장을 추구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 따라서 벤처를 가장한 사이비벤처는 과감하게 정리하여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일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공정위는 벤처업계의 공정한 시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 금번 벤처기업에 대한 서면조사는 벤처기업의 무리한 계열사 확장, 부당한 계열사 지원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것입니다.

21. 벤처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조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과 조사대상 기업의 선정기준을 물으셨습니다.

□ 벤처기업에 대한 이번 거래현황 자료요청은

○ 그동안 일부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을 기술개발 등 벤처기업 고유의 목적 이외에 계열사 확장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 대한 공정위 업무보고 시에도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요청이 있었던 데 따른 것입니다.

□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지분율이 10%이상인 피출자회사가 3개 이상인 벤처기업, 금융관련회사를 피출자회사로 보유한 벤처기업,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투자한 벤처기업입니다.

(安大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관련 공정위의 패소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사업자가 제품의 고급화를 빌미로 가격을 올릴 경우 소비자 보호방안은?

□ 동서식품 및 한국네슬레 판결에 대한 공정위 입장

○ 지난 3월 15일 대법원은 동서식품 및 한국네슬레의 가격담합행위건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내용은 공동행위를 합의추정하기 이전에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커피시장은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가 많은 시장으로서 커피제조업체가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렸을 뿐이므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경쟁제한성 입증과 관련된 선진국의 사례는
- 미국에서는 가격담합행위는 당연위법으로 보아 경쟁제한성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 일본은 담합행위자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으면 예외 없이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본 건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사건 당시 99%였습니다.

○ 공정위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작하고 커피시장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자료 및 경제논리 등을 보강하여 파기환송심에 대처할 생각입니다.

□ 제품 고급화를 빌미로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공정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기본적으로 시장경제하에서 기업이 제품차별화로 제한된 수요층을 상대로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의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사업자들이 담합으로 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변경하거나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가격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하여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생각하는 사채이자율의 적정 상한선과, 만약 이것이 재경부의 안이나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채업자 등록 및 적정 사채율을 정하고자 하는 법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02. 4. 30일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입법부에서 사채이자율과 관련,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입법부가 결정을 내린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법집행기관의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사채이자율이 너무 높게 인정될 경우, 사채를 불가피하게 이용해야만 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국내외 자금의 사채시장 유입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카드사들이 힘있는 가맹점에겐 수수료를 싸게 해 주고 힘없는 가맹점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명확한 기준 없이 가맹점의 대응정도에 따라 임의로 수수료율을 정함으로써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카드사들은 각자, 자사의 영업방침에 의거 업종별, 매출액 수준, 매장의 종류 등을 감안, 수수료율을 결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금년도에 신용카드업에 대한 시장구조개선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할 것이며

○ 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율를 정함에 있어 담합하는 경우도 조사하여 시정할 것입니다.

(林鎭出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30대그룹의 기업결합이 줄고 업종전문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30대그룹의 기업분할이 증가하는 것은 30대그룹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축소되는 가운데 사업구조 재편의 활발한 진행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에는 30대그룹의 기업결합이 감소하고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는 기업자체의 사업구조 개편노력이 강화되고,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등 감시체계의 확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기업경영의 투명성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은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대기업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개편된 대기업집단정책은 규제대상의 증가로 규제완화 취지에 어긋나고, 예외조항만 증가한 것으로 이번 법개정이 의도하는 투자촉진에 한계가 있지 않은지와 대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금융 등 관련제도의 보완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채무보증과 상호출자 등의 직접규제 확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이번 대기업집단지정방식의 개편에 따라 상호

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은 43개로 확대되었으나 출자총액제한집단은 19개로 축소되어 오히려 완화되었습니다.

○ 이는 무분별한 순환출자의 폐해는 계속 방지하면서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강화나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출자는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내용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상호출자·채무보증 규제대상이 늘어난 것은 상호출자·채무보증으로 등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은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집단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부처·관련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 상호출자는 가공자본의 증식이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인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일본, 영국 등 외국에서도 제한하고 있으며,

○ 채무보증은 과다차입을 통한 선단식 경영과 개별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의 유지·확장 수단으로 사용되어 동반 부실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전화권유판매를 주요 판매방식으로 하는 할인회원권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방문판매법상 신고제인 전화권유판매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공탁·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 방문판매법에서는 전화권유판매를 새로운 규제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따라서 동 법안이 시행되는 금년 하반기에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예방·구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신고제인 전화권유판매를 등록제로 전환하거나 공탁·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그에 따른 사업자 부담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4. 현행 할인회원권업체의 대금결제시스템 구조상 소비자피해 발생 시 보상재원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다단계판매업자가 시행 중인 공탁 및 공제회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 할인회원제사업에 대해 시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실태조사를 토대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할인회원권 가입회원의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탁제도 도입 등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 현재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조사권한이 결코 약하지 않으며, 자료제출 거부나 조사방해·기피시 과태료만 매기기 때문에 사법경찰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는데?

□ 공정위가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지금까지 계속 관련 제도를 보완해 왔음에도 기업들의 위반행위는 물론 조사거부나 방해행위가 그치지 않는 것을 보면,

○ 결국 강제조사권이 수반되지 않는 조사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 기업입장에서 보아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상당한 과징금을 무는 것보다 과태료(최대 2억 원)를 물더라도 조사방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조사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따라서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적용의 형평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최근 '공표명령'과 같이 위헌판결 또는 위헌성이 제기되는 조항이 늘고 있는데 공정위는 달라진 경제환경에 맞지 않아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공표명령에 대한 헌재의 결정취지는 공표에 의해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알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법원에 의해 위반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법위반사실을 알리는 것'이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이미 후속조치 및 관련 제도를 개선(지침 개정 등)하였음.

□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그 위반여부를 감시하는 일이 공정위 본연의 업무로 과징금 부과 등 사후규제에만 의존하지는 않고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이나 기업의 자율준수제도의 도입·확산 등을 통해 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위원님 지적대로 규제개혁 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맞도록 미흡한 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朴炳錫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공정위는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정부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견해 차이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 과거 개발연대 이후 아직까지 행정기관이 행정지도를 통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지도에 의한 담합이 발생하여 경쟁이 제한되고 결국은 소비자 후생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지도로 인하여 사업자가 담합행위를 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비록 행정기관이 당해 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지도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경쟁제한적인 공동행위를 유발하는 행정지도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공정위는 각 부처와 사전 업무협조를 강화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장하는 행정지도를 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개별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경제행위를 실행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2-1.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제보자에 대하여 최근 2000만 원 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금지급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실명신고의 경우에만 조사한다면 제보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2-2. 따라서 비실명 제보도 조사해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된다고 보며, 앞으로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담합을 근절해야 한다고 보는데?

□ 사업자의 카르텔 자체가 갈수록 은밀화 되고 지능화 되고 있어 카르텔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제도를 2002년 2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공동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한편, 보상금지급 제도와는 별도로 비실명 신고 건에 대해서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충분하거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직권인지를 통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근절을 위하여 재경부와 공공 공사 입찰기관인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李性憲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현재 현대-기아차의 독점상황으로 가격, 차량품질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2. 현재 승용차시장은 현대-기아의 점유율이 73.6%로 순수독점상태로 판단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 현재 자동차시장이 독과점적 구조이고 이로 인해 가격, 품질 등에서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기업결합의 경우 시장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었으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산업합리화 효과와 국제경쟁력 강화효과 등을 고려하여 '99. 4월에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화물차 시장의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수출가격과 연동하도록 조건을 붙여 인정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자동차시장의 독과점구조가 형성된 점은 있으나 이러한 시장구조가 시장지배력남용으로 이어져 소비자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감시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3. 현대자동차는 신용카드로 자동차구매시 임의로 결제한도를 제한하고 나머지는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공정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실제로 행해지고 그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4. 승용차시장에서 가격담합 등 독점으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2002. 2월 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승용차 부문 시장점유율은 73.6%인 바(자동차공업협회 자료),

○ 이에 의하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할 것이며

○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5. 이름만 구조조정본부이지 사실상 과거의 회장실, 비서실, 기조실의 부활을 의미하고 그 역할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구조조정본부가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과거의 비서실·기조실처럼 선단식경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행태가 재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 앞으로 구조조정본부의 상설화, 과거 기조실·비서실 조직·기능으로의 전환 등 업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 부당내부거래 지시 등 법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사안별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6. "5플러스3"의 원칙과 합의가 아직도 유효한지, 기조실 부활을 의미하는 구조본의 상설화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기업구조개혁 기본틀인 「5+3」원칙은 아직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동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구조조정본부의 상설화에 대한 공정위 입장에 대해서는 앞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구조조정본부 등 중앙콘트롤 타워가 있는 한 계열사 간의 부당내부거래는 근절되기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본부 등에 의해 중앙콘트롤 체제가 상존해 있는 경우 선단식 경영이나 부당내부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 앞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사항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인지될 경우 현지조사하여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과 동시에

○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등 내·외부 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대우 위장계열사 처리와 관련하여 '99. 8월 이전은 김우중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8월 이후에는 채권단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2월 임시국회에서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료제출이 안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조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 대우 위장계열사 조사와 관련한 조사대상업체 명단, 주주현황, 조치결과 등 전반적인 자료는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 채권단이 책임질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 위장계열사 운영관련 공정거래법상 책임이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데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따른 최종책임은 동일인에게 있습니다.

- '98. 4월 및 '99. 4월 기업집단 지정시 「대우」의 동일인은 김우중이므로 2000. 3월 말까지는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책임이 김우중에게 있고,
- 2000. 4월에는 대우그룹의 해체로 「(주)대우」가 기업집단에 지정되었고, 「(주)대우」의 동일인은 (주)대우이므로 허위자료 제출책임은 김우중이 아닌 (주)대우에게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위장계열사 관련 '98. 4월 및 '99. 4월 지정 시 「대우」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하여는 「대우」의 동일인인 김우중을, 2000. 4월 지정 시 「(주)대우」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하여는 동일인인 (주)대우를 각각 고발하였습니다.